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한 · ASEAN FTA가 한 · 베트남 상품교역에 미치는 영향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부투히엔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한 · ASEAN FTA가 한 · 베트남 상품교역에 미치는 영향

공동 지도교수 윤광운 · 최영봉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부투히엔

부투히엔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월



주심 경제학박사 최홍석 (인)

위원 경제학박사 하명신 (인)

위원 경제학박사 최영봉 (인)

< 목 차 >

제I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
1. 지역무역협정의 선행연구.....	4
2. 한 · ASEAN FTA의 선행연구.....	7
제II장 한 · ASEAN FTA 추진상황	9
제1절 FTA에 관한 이론적 접근.....	9
1. FTA의 개념.....	9
2. FTA의 유형.....	10
제2절 한 · ASEAN FTA의 추진현황.....	14
1. 한 · ASEAN FTA의 추진 배경.....	14
2. 한 · ASEAN FTA 협상 진행경과 및 협정문의 구성...15	
3. 한 · ASEAN FTA 관세양허계획.....	18
제3절 한 · ASEAN FTA 상품협정 진행 결과.....	27
1. 한국의 대 ASEAN 수입활용률 분석.....	27
2. 한국의 대 ASEAN 수출실용률 분석.....	31
제III장 한 · 베트남 상품교역에 관세인하 영향	33
제1절 한 · ASEAN FTA에서 베트남 및 한국의 상품양허안 내용	33
1. 한 · ASEAN FTA에서 베트남의 상품양허안 내용.....	33
2. 한 · ASEAN FTA에서 한국의 상품양허안 내용.....	36
3. 한국입장에서 한 · ASEAN FTA의 긍정적인 효과.....	39

제2절 한 · 베트남 상품교역에 관세인하 영향	41
1. 양국교역량 급증.....	41
2. 베트남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변화.....	44
3. 한국 무역에서 베트남의 위상변화.....	47
4. 양국의 산업별 상품교역변화.....	51
5. FTA 특혜관세 적용동향.....	56
 제IV장 한 · 베트남 상품교역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59
제1절 한 · 베트남 상품교역의 문제점	59
1. 관세제도의 문제점.....	59
2. 통관절차의 문제점.....	63
3. 시장정보의 부족.....	65
4. 수출경쟁력의 약화.....	66
제2절 한 · 베트남 상품교역의 대응방안	68
1. 관세제도 문제점의 대응방안.....	68
2. 통관절차의 투명성 확보.....	69
3. 시장정보의 확대.....	70
4. 다양한 상품 수출.....	71
 제V장 결론	73
제1절 결론.....	73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75
 <참고문헌>.....	77

〈 표 목차 〉

<표 2-1> FTA의 유형	11
<표 2-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11
<표 2-3> FTA와 동일단계의 지역무역협정	13
<표 2-4> 한 · ASEAN FTA 협상경위	16
<표 2-5> 한국과 ASEAN6의 관세철폐 스케줄	21
<표 2-6> 베트남의 관세철폐 스케줄	22
<표 2-7>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관세철폐 스케줄	22
<표 2-8> 일반민감품목의 관세인하 일정	24
<표 2-9> 초민감품목군의 관세인하 스케줄	25
<표 2-10> 한 · ASEAN FTA: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26
<표 2-11> 한 · ASEAN FTA 발효 1년차 수입활용률	28
<표 2-12> 한 · ASEAN FTA 발효 2년차 수입활용률	30
<표 2-13> 한 · ASEAN FTA 수출실용률	32
<표 3-1> 베트남 양허안의 양허유형별 · 산업별 분류	34
<표 3-2> 한 · ASEAN FTA 상품 특혜율(베트남)	35
<표 3-3> 한국의 양허안의 양허유형별 · 산업별 분류	37
<표 3-4> 한 · ASEAN FTA 상품 특혜율(한국)	38
<표 3-5> 연도별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동향	43
<표 3-6>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2007~2010)	45
<표 3-7>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2007~2010)	46
<표 3-8> 2008~2010년 한국 주요국별 수출현황	48
<표 3-9> 베트남이 차지하는 한국교역 위상변화	48

<표 3-10> 한 · ASEAN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 ASEAN 국별 수출 추이	49
<표 3-11> 한 · ASEAN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 ASEAN 국별 수출 추이	50
<표 3-12> 한 · ASEAN FTA 발효 전후 대 베트남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52
<표 3-13> 베트남의 대 한국수입 상위 10대 품목	54
<표 3-14> 한 · ASEAN FTA 발효 전후 대 베트남 산업별 수입증가율 추이	55
<표 3-15> 베트남의 대 한국수출 상위 10대 품목	56
<표 3-16> 한 · ASEAN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국가별)	57
<표 4-1>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품목의 베트남 관세 인상 현황	61
<표 4-2> 베트남 수입시 HS 코드 적용 오류 사례	65

< 그림 목차 >

<그림 2-1> 한 · ASEAN FTA 협정 구성	18
<그림 2-2> 관세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 분류	20
<그림 2-3> 한 · ASEAN FTA 1년차 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의 국가별 수입비중	29
<그림 2-4> 한 · ASEAN FTA 2년차 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의 국가별 수입비중	31
<그림 3-1> 베트남의 상품양허안 계획	33
<그림 3-2> 한국의 상품양허안 계획	36

<그림 3-3> 연도별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동향	42
<그림 3-4> 한 · 베트남 교역 동향	44
<그림 3-5> 특혜관세 적용 상위 10대 수출품목	58
<그림 3-6> 특혜관세 적용 상위 10대 수입품목	58



The Impacts of Korea · ASEAN FTA on Merchandise Trade between Korea and Vietnam

Vu Thu Hie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ogistics,
Graduated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re have been more and more countries in the world signed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their partners in order to upgrade their trade effects. Korea · ASEAN FTA, especially in the case of Vietnam, has made Korea · Vietnam's trade increase remarkably since it went to effect in 2007. Before the FTA, Korea ranked the 11th in exportation and the 5th in importation of Vietnam but jumped up to the 4th and the 2nd respectively, which has been considered a great achievement in their bilateral trade relationship. In addition, Korea now is the second largest investor in Vietnam after USA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Vietnam's economy development.

The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positive impacts of Korea · ASEAN FTA on Korea · Vietnam's merchandise trade in recent years. On the other hand, it also argues the challenges that Korea and Vietnam face in their trade relationship such as yearly changed tariff rate, the difference of Vietnam's product categories from

global system, the limitation of market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distribution system, etc. Once such challenges are improved, Korea · ASEAN FTA will not only create more trade and benefits but also become a "push-up" for Korea · Vietnam FTA in near future.



제I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세계 통상 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의는 이전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보다 현재 WTO 체제 이후에 오히려 급격히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2001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일본 · 싱가포르 경제제휴협정(Japan · 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출범시켰고, 중국은 2001년 ASEAN+중국 정상회담에서 FTA를 제안하였고 ASEAN측과 공동연구와 협상을 거쳐 2004년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한국은 2003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에 FTA를 제안하여 몇 단계로 나누어 협정이 추진되었다. 한 · ASEAN FTA는 2004년 초부터 2010년까지 상품협정은 한국과 ASEAN 10개국에 모두 발효되었으며, 서비스 협정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를 제외한 ASEAN 회원국과 한국에 발효되었으며, 투자협정은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및 태국에만 이행 중이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간 FTA 공동작업반 제3차 회의가 2011년 3월 16일(수)~17일(목)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 · 베트남 FTA 공동작업반은 2009년 10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과 2010년 3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양국간 FTA 추진 가능성과 실

효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0년 6월 제1차 회의(서울), 2010년 10월 제2차 회의(베트남)가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베트남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금년 중으로 공동연구를 종료한다는 목표 하에 향후 작업 계획과 한·베트남 FTA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¹⁾

베트남과 한국은 1992년 수교를 한 후에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경제면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해왔다. 특히 한·ASEAN FTA의 상품분야협정이 2007년 6월 발효됨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되는 상품들은 한·ASEAN FTA에서 정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전체품목의 63%가 무관세가 적용 중이며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전체 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한편,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후 3년(2007년 7월~2010년) 양국 간의 총 교역량은 128억 불로 2009년에 전년대비 42.7% 증가를 기록하였다. 교역액 중에는 베트남의 한국 수출금액은 30억 달러 2009년에 대비 약 49.8%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베트남의 한국 수입금액은 97억 달러 2009년에 대비 40.6%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미국에 이어 베트남의 제2위 투자국이며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의 교역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한·ASEAN FTA 상품협정을 체결한 후에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베트남 상품무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

1) 한국외교통상부, 통합검색: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3차 회의 개최, 게시일: 2011.3.14

게 함으로써 향후 한 · 베트남 FTA 추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으리라 생각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논문에서는 한 · ASEAN FTA 상품협정을 체결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시된 한국 · 베트남 상품교역을 통해서 양국 간의 수출입관세양허를 파
악하며 관세양허의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의 상품무역에
관세인하를 실시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분석한 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
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베트남과 한국에 관련된
국내문서, 국내외 석 · 박사 학위논문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외교통상부,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KITA),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
외교통상부 등 연구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및 보고서, 양국 정부의 발표자
료 및 인터넷정보 검색, 분석, 비교 등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에 대해 정리한
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한 · ASEAN FTA의 개관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 FTA의 개념을 정리하며, 한 · ASEAN의 FTA
상품협정의 관세양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 · ASEAN의 FTA 상품협
정의 2년차 이행현황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한 · 베트남 상품양허안 내용을 한 번 정리하며, 한 ·
ASEAN FTA 상품협정을 체결시점 이후 한 · 베트남 상품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 · 베트남 상품교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지역무역협정의 선행연구

관세무역협정에 관한 이론은 관세동맹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해 1950년에 출간된 J. Viner의 ‘관세동맹론’에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²⁾ 고비용 역외국으로부터 저비용 역내국으로 수입국을 바꿀 경우 무역이 창출되고, 반대로 저비용 역외국으로부터 고비용 역내국으로 수입국을 바꿀 경우 무역이 전환된다. Viner는 ‘무역창출의 경우에는 복지수준이 증가되고, 무역전환의 경우에는 복지수준이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무역전환의 경우에도 역내국의 상대가격에 따라 복지수준이 증가될 수 있다.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라 복지수준이 감소하지만, 소비증가에 따른 복지수준의 증가가 그 감소분보다 클 경우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증가한다. 한편, 지역무역협정이 역내국의 복지수준은 증가시키지만 역외국의 복지수준은 감소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 Viner, J. (1950). "The Custom Union Issues,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한 후생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해 많은 이론적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Bhagwati와 Panagariya(1996)³⁾은 지역무역협정이 회원국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다자주의 무역 자유화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는 지역무역협정이 회원국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최소 비용을 제공하는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무역 전환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무역전환이 무역 창출을 압도하여 결국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의 후생수준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De Melo et al. (1993)⁴⁾은 무역전환과 무역창출 분석 모델을 통해 지역무역협정의 후생 효과에 대해 좀 더 균형잡힌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관세를 인하한 국가의 후생효과는 모호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국가로부터의 무역 전환이 발생하지만 총 무역이 증가하므로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통합 유형에 따르면, 경제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역내 외국 간의 차별적 관세인하, 역외 공동관세, 생산요소 시장의 통합, 공동경제정책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중 경제통합이론과 다른 국제경제이론을 구별 짓는 가장 큰 요소는 차별적 관세인하라 할 수 있다. 역외 공동관세를 실시하는 과정이나 메커니즘은 지역무역협정 이론의 분석대상이지만, 두 국가의 관세율이 동일하다는 사실 자체는 무역이론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생산요소의 국경 간 이동도 지역무역협정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며, 공동경제정책도 지역무역협정의 이론적 특징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 에너지협력연구에서 '통상적인 무

3) Bhagwati, J. and Panagariya, A.(1996), The Economics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ashington, D.C: AEI Press.

4) De Melo, J. and Panagariya, A.,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역이론에서 (일률적인) 관세인하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온다. 최적관세 수준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대국의 경우에는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소국의 경우에는 항상 관세인하가 최상의 전략이다. 하지만 차별적인 관세인하를 다루는 경제통합이론에서는 무역이 창출되는가, 전환되는가에 따라 관세인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 하였다. 하지만 Kemp와 Wan(1976)⁵⁾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지역 무역협정이 역내국과 역외국 모두의 복지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한편, 회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FTA의 유형을 선진국 · 선진국, 선진국 · 개도국, 개도국 · 개도국간 FTA로 나눌 수 있다. Venables(1999)⁶⁾는 이에 대해 저소득 국가간의 FTA 체결은 무역전환의 효과로 인해 체결국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반면 고소득 국가와의 FTA 체결은 저소득 국가의 소득을 고소득국가의 수준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산업구조 면에서 보면 Heckscher-Ohlin(1991)⁷⁾은 무역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각국의 요소 부족도의 차이를 들었는데, 산업의 비교 우위는 요소 부존 비율에 의해 결정이 되고 이 요소 부존 비율의 차이에 따라 해외와의 교역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끼리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어 교역이 증대될 수 있게 되고 또한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5) Kemp, M. and Wan, H. (1976), "An Elementary Proposition Concerning the Formation of Customs Un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 Fujita, M., Krugman, P. and A.J.Venables (1999), The Spatial Economy: Cities, Regions, and International Trade: MIT Press: Cambridge and London.

7) Eli F. Heckscher and Bertil Ohlin (1991), "Heckscher-Ohlin Trade Theory", Cambridge: The MIT Press.

2. 한 · ASEAN FTA의 선행연구

베트남과 한국간의 경제, 무역, 투자, 문화 등과 관련된 연구와 한 · 미, 한 · 칠레, 한 · 중 등 FTA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연구논문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중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손우식(2005)⁸⁾은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동향을 나타낸 바탕으로 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며, 한국의 FTA 대응 필요성, 전략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용진(2006)⁹⁾은 한국의 FTA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고찰과 한 · ASEAN FTA에 대한 경제적인 관계와 한, 중, 일의 대 ASEAN FTA를 비교 분석하며, 한국의 FTA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해 아세안국가로의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수경(2008)¹⁰⁾은 한국과 ASEAN 주요 국가와의 최신 교역 현황을 토대로 국가별 주요 교역 품목과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한 FTA 협정 전후의 관세율을 비교함으로써 한 · ASEAN FTA가 한국의 ASEAN 주요 국가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류티투호영(2010)¹¹⁾은 한 · ASEAN FTA 체결시점에 비해 이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교역, 투자변화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양자 FTA 추진전망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8) 손우식(2005), “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용진(2006), “한 · ASEAN FTA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무역통상학회지」 제6권 제2호.

10) 박수경(2008), “한 · ASEAN FTA 체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ASEAN 주요국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류티투호영 (2010), “한국 · 베트남 FTA의 전망”,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처럼 한 · ASEAN FTA 발효 이후에는 한 · 베트남 상품교역 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한 · ASEAN FTA의 관세인하내용을 파악하고 한 · 베트남 상품교역 변화를 집중 분석하여 이 변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II장 한 · ASEAN FTA 추진 상황

제1절 FTA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관세와 기타의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국 간의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GATT규범에 근거한 정의는 상품교역에 한하여 FTA를 규정짓고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의 FTA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intellecture property rights), 정부조달, 환경, 경쟁정책 등으로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¹²⁾

FTA는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각 협정별로 포괄범위에 따라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념을 확인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실제 학자들 간에도 FTA를 비롯한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통합을 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G.Myrdal, R. Erbes, F. Perroux와 같은 학자는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지역경제통합은 사회경제적 이상실현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J.Tinbergen, B.Balassa 등은 근대경제학적 시각에서 경제일반에 관련된 국제적 경제거래구조의 변화

12) 이재기, FTA의 경제학, pp. 251~252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셋째, J. Viner, J. E. Meade 등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근본적으로는 전통적 관세동맹의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를 관찰하고자 했다.¹³⁾ 한편, 시장경제 권내에서 지역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결성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FTA를 정의하면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간에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자적인 광역시장권을 형성하고, 이로부터 각 가맹국은 경제적 · 기술적 이익을 향유하며, 통합체 전체의 후생증진을 꾀하고자 하는 국제간 경제협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¹⁴⁾

2. FTA의 유형

FTA의 유형은 연구기관 또는 학자에 따라 다수의 형태로 구분되고 있으나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FTA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FTA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B. Balassa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회원국들간의 경제적 결합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FTA : Free Trade Area), 관세동맹 (Customs Union), 공동시장 (Common market), 경제동맹 (Economic Union), 완전경제통합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Balassa의 분류기준 이외에 M.Chacholiades가 FTA의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부문별특혜무역협정 (Sectoral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을 첫 번째 분류형태로 추가하고 Balassa의 분류를 살펴보기로 한다.¹⁵⁾

13) 손병해, 경제통합론, 제2판, 법무사, 1994, pp.7~9

14) 손병해, 경제통합론, 제2판, 법무사, 1994, p.10

15) 이재기, FTA의 경제학, pp.211~212

<표 2-1> FTA의 유형

구분	유형
J.Tinbergen	①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 ②부분적 통합 ③자유무역지역 ④관세동맹 ⑤경제동맹
B.Balassa	①자유무역지역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경제동맹 ⑤완전경제통합
ALIM ELAGRAA	①자유무역지역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완전한 경제동맹 ⑤완전한 정치적통합
S.P.Magee	①자유무역지역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완전한 경제통합
M.Chacholiades	①부분별특혜무역협정 ②자유무역지역 ③관세동맹 ④공동시장 ⑤경제동맹

자료: 이재기, FTA의 경제학, pp.211~212

아래의 <표 2-2>은 Balassa의 단계 분류보다 일반화하여, 특정 수준의 지역적 무역협정이 가장 낮은 형태의 협력에서부터 가장 높은 형태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표 2-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 정책 수행	초 국 가 적 기구 설치 운영
①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등)		
④완전경제통합(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자료: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동맹(Customs Union: MERCOSUR)
-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각국은 FTA와 동일 단계의 지역무역협정(RTA)을 추진하면서 FTA이외에 다양한 명칭(SECA, EPA, CEPA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국의 정치경제적 이유로 해당 명칭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협정의 내용면에서는 FTA와 차이가 거의 없다. 일본은 FTA 체결시 EPA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EU는 주변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표 2-3> FTA와 동일단계의 지역무역협정

구분	내용	사용예
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또는 경제연계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본으로 투자, 지적재산권보호, 인적 교류활성화까지 포함한 광의의 경제통합의미. 무역자유화(관세철폐)에 중점을 둔 FTA에 더해 경제·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	-일본은 대부분 RTA에서 동명칭 사용 -EU-ACP EU-SADC
ECA	*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경제보완협정) - 중남미국가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시 사용된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FTA 전단계의 자유화 의미	- 멕시코 - 페루
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전략적경제보완협정) - 양국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한국과 자국내 산업계 반대에 부딪친 멕시코간 입장을 절충하기 위해 멕시코에 의해 제시된 명칭.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추진된 바 있는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ECA)을 원용한것 · 이후('07.8) 한-멕시코는 정식 FTA 추진에 합의	- 한- 멕시코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도내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양국 합의하에 채택된 용어로 상품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 성격임.	- 한- 인도
CEPA	*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협력강화협정) -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용	- 중- 홍콩, 마카오
TIFA	* Trade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무역투자기본협정)	-미- UAE

자료: KOTRA,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2007.

제2절 한 · ASEAN FTA 추진 현황

1. 한 · ASEAN FTA의 추진 배경

한 · ASEAN FTA에 대한 논의는 2003년 10월 8일 한 · ASEAN 정상 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한국과 ASEAN 10개국의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 · ASEAN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공동연구가 2004년 3~8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김한수 당시 외교통상부 FTA 담당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하였고 ASEAN 측은 데이비드 친(David Chi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ASEAN 10개 회원국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양측은 한 · ASEAN FTA 간의 경제자유화가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민감 품목을 제외한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서비스 · 투자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양국 간의 공동연구 외 별도로 한국은 한 · ASEAN FTA 공청회(2004년 8월 4일), FTA 민간자문회의(2004년 8월 26일)를 개최하여 국내 업계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 · ASEAN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탁하여 동 FTA가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 사회적 손익을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 · ASEAN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공동연구가 FTA 추진을 양측 정상들에게 건의함에 따라

2004년 11월 30일 개최된 한 · ASEAN FTA 정상회의에서 양측 정상들은 2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¹⁶⁾

2. 한 · ASEAN FTA 협상 진행경과 및 협정문의 구성

가. 한 · ASEAN FTA 협상 진행경과

한 · ASEAN FTA는 경제적 발전단계가 상이한 ASEAN 10개국과의 협상으로부터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기존 FTA에서 사용되었던 단일협상방식이 아닌 기본협정문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을 순차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 · ASEAN FTA 협상 추진을 위해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을 결정하고, 5차례의 전문가회의 개최 끝에 2004년 11월 한 · ASEAN FTA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 채택 및 2년 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 개시선언을 하였다. 2005년 2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5년 12월에 한 · 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한 · 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하였다.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2006년에 개최된 9차 협상부터는 품목별 양허안과 원산지규정 중 잔여 쟁점, 그리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 · ASEAN FTA 특혜 관세 부여 문제 등 상품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전개되었으며 동시에 서비스 및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도 개시되었다. 2006년 4월 제11차 협

16)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 ASEAN FTA 주요내용 -기본협정·분쟁해결제
도협정·상품무역협정」, 2007, pp.9~10

상에서 한 · ASEAN FTA의 상품무역협상이 타결되어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 · ASEAN FTA 경제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하였다.¹⁷⁾ 한국은 2007년 4월에 한 · ASEAN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받았으며 2007년 6월에 한 ·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어서 서비스의 경우 2007년 11월에 개최된 한 · 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 ASEAN FTA 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고 2009년 5월 한 · ASEAN FTA 서비스협정이 발효되었다. 투자협정은 2009년 4월에 타결되어 2009년 6월에 서명하였고 2009년 9월에 발효된 상황이다.

〈표 2-4〉 한 · ASEAN FTA 협상 경위

2003.8.30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 결정
2003.10.8	한 · 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데 합의
2004.2	전문가그룹 구성 및 상호 통보
2004.3.8~3.9	제1차 전문가회의 개최
2004.8	제5차 전문가회의 개최
2004.11.30	한 · 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 채택 및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 선언
2005.2.23~25	제1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05.12.9	한 · 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상품자유화 방식 합의
2005.12.13	한 · 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
2006.4.23~28	제11차협상 개최(캄보디아 프놈펜): 상품무역협상 타결
2006.8.24	한 · ASEAN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 · ASEAN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
2007.4.2	한 · ASEAN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국회비준 동의

17) 태국은 국내 정치 사정을 이유로 상품협정에 불참하였다가 이후 5차례의 양자협상을 거쳐 2007년 12월에 최종 타결되었다.

2007.6.1	한 · ASEAN 상품무역협정 발효
2007.11.21	한 · 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 ASEAN 서비스협정 서명
2009.4~4.08	한 · ASEAN FTA 제25차 협상(방콕): 투자협상 타결
2009.5	한 · ASEAN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2009.6.2	한 · ASEAN 투자협정 서명
2009.9.1	한 · ASEAN 투자협정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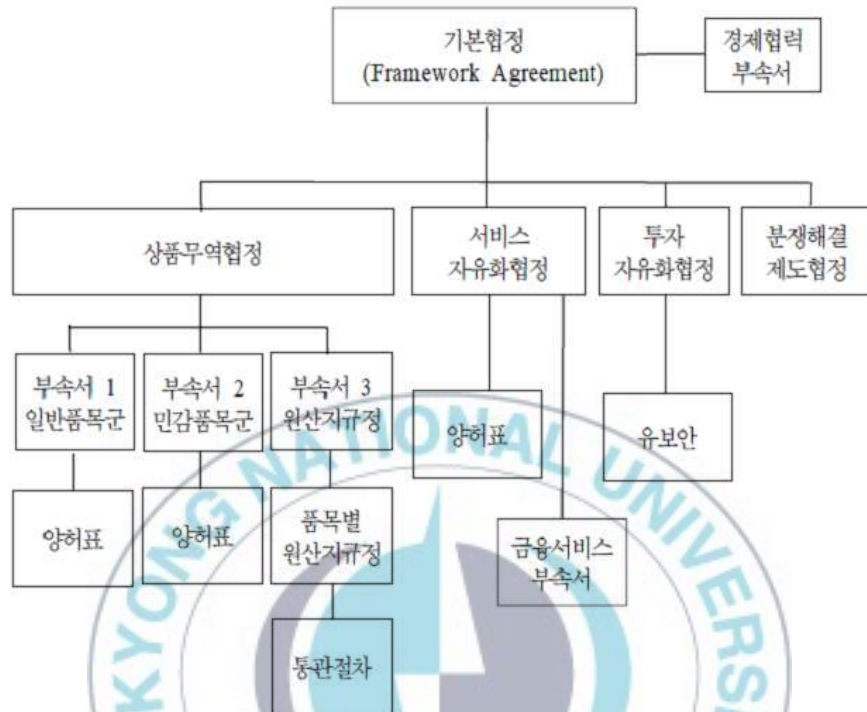
자료: 외교통상부, 「한 · ASEAN FTA 주요내용」, 2007년

나. 협정문의 구성

기본 협정은 한 · ASEAN FTA의 모범으로 협정의 법적 적용 범위 및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한국과 ASEAN 양측이 FTA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담고 있다.

상품무역협정은 본문과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철폐일정을 포함하는 일반 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부속서에는 각각 양허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민감품목군으로 다시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으로 나누어지며, 각 국가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유연한 관세 철폐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 부속서에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 · ASEAN FTA 협정문의 구성을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한 · ASEAN FTA 협정 구성



자료: 외교통상부, 「한 · ASEAN FTA 주요내용」, 2007년

3. 한 · ASEAN FTA 관세양허계획

기본 협정은 한 · ASEAN FTA의 모범으로 협정의 법적 적용 범위 및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한국과 ASEAN 양측의 FTA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담고 있다. 상품무역협정은 본문과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철폐일정을 포함하는 일반품목군¹⁸⁾과 민감품목군¹⁹⁾의 부속서에는 각각

양허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으로 나누어지며, 각 국가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유연한 관세 철폐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가.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품목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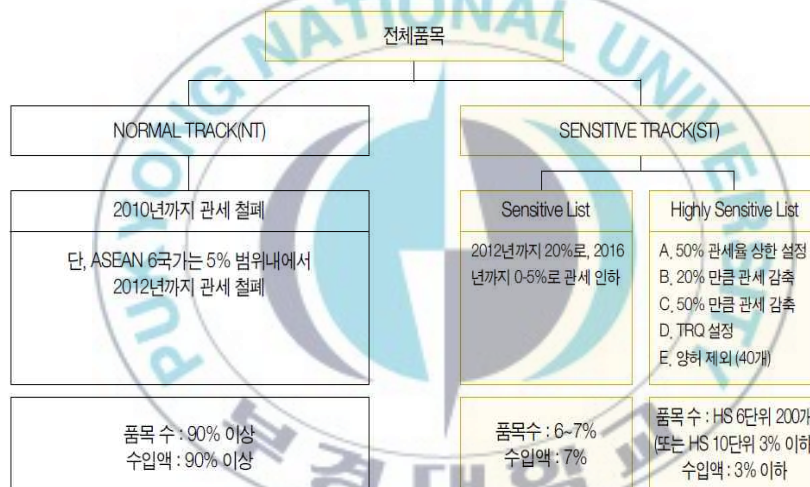
먼저 모든 품목은 일반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분류되며 어떠한 품목을 어느 품목군에 포함하는가는 각 당사국에 의해 자발적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은 전체 관세 품목의 9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대국(ASEAN 회원국의 경우 한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 ASEAN 회원국 전체)으로부터의 2004년도 총수입액의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은 전체 관세 품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대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발 ASEAN 가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CLMV)은 그 발전 정도를 감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에는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은 수입액 기준없이 전체 관세 품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수입액 기준의 25%로 완화하고 있다.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ighly

18) 일반품목(Normal Track:: NT)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품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일반품목에 해당된다.

19) 민감품목(Sensitive Track: ST)이란 각 국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으로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이유로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철폐일정이 긴 품목, 관세인하의 하한선을 가진 품목, 혹은 관세인하 혹은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관세철폐 일정이 일반품목에 비해 지연되는 일반민감품목과 관세인하의 하한선이 설정되거나 혹은 관세인하 혹은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품목으로 나뉜다.

Sensitive List)으로 분류되며 일반민감품목에 포함되는 품목은 품목 수 기준으로 6~7%, 그리고 수입액 기준으로 7%를 초과할 수 없다. 초민감품목은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의 수는 HS²⁰⁾ 6단위로 200개 또는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품목 수의 3%로 제한되며 상대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 품목수의 30%제한 만이 적용된다.

<그림 2-2> 관세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 분류



자료: 외교통상부, 「한 · ASEAN FTA 주요내용」, 2007년

나.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1) 일반품목군

20) HS code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통일상품 분류방식이다. HS code 25류를 97류를 다루는 공산품과 HS 24류 이하의 농림수산물물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속서를 만들게 된다.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는 참여국의 발전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발전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한국과 흔히 ASEAN6로 알려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CLMV 국가 중 발전 정도가 여타 3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의 경우 2016년까지,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8년까지 일반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완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국가군의 관세 철폐 스케줄은 다음의 <표 2-5>~<표 2-7>에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004년 기준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17%인 상품의 경우 2006년 1월 1일까지 15%로 인하하며 2007년 1월 1일까지 10%로, 2008년 1월 1일까지 8%, 2009년 1월 1일까지 5%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며 2010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5> 한국과 ASEAN 6의 관세 철폐 스케줄: 일반품목군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ASEAN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1일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X \geq 20\%$	20	13	10	5	0
$15\% \leq X < 20\%$	15	10	8	5	0
$10\% \leq X < 10\%$	10	8	5	3	0
$5\% < X < 10\%$	5	5	3	0	0
$X \leq 5\%$	관세 인상 금지			0	0

자료: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주요내용」, 2007년

<표 2-6> 베트남의 철폐 스케줄: 일반품목군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 · ASEAN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1일까지)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1 년	2013 년	2015 년	2016 년
$X \geq 60\%$	60	50	40	30	20	15	10	0
$40\% \leq X < 60\%$	45	40	35	25	20	15	10	0
$35\% \leq X < 40\%$	35	30	30	20	15	10	0~5	0
$30\% \leq X < 35\%$	30	30	25	20	15	10	0~5	0
$25\% \leq X < 30\%$	25	25	20	20	10	7	0~5	0
$20\% \leq X < 25\%$	20	20	15	15	10	7	0~5	0
$15\% \leq X < 20\%$	15	15	15	10	7	5	0~5	0
$10\% \leq X < 15\%$	10	10	10	8	5	0~5	0~5	0
$7\% \leq X < 10\%$	7	7	7	7	5	0~5	0~5	0
$5\% \leq X < 7\%$	5	5	5	5	5	0~5	0~5	0
$X < 5\%$	관세 인상 금지						0	

자료: 외교통상부, 「한 · ASEAN FTA 주요내용」, 2007년

<표 2-7>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관세 철폐 스케줄: 일반품목군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 · ASEAN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1일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X \geq 60\%$	60	50	40	30	20	10	0
$40\% \leq X < 60\%$	45	40	35	25	15	10	0
$35\% \leq X < 40\%$	35	30	30	20	15	5	0
$30\% \leq X < 35\%$	30	30	25	20	10	5	0
$25\% \leq X < 30\%$	25	25	20	20	10	5	0
$20\% \leq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leq X < 20\%$	15	15	15	10	5	0~5	0
$10\% \leq X < 15\%$	10	10	10	8	5	0~5	0
$7\% \leq X < 10\%$	7*	7*	7*	7*	5	0~5	0
$5\% \leq X < 7\%$	5	5	5	5	5	0~5	0
$X < 5\%$	관세 인상 금지						0

주: * 미얀마는 2010년까지 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율을 7.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료: 외교통상부, 「한 · ASEAN FTA 주요내용」, 2007년

일반품목군에 속한 상품 중 종량세의 적용을 받는 품목들은 관세 철폐 스케줄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균등 분할하여 0%로 인하하며, 2004년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율이 이행계획보다 빠르게 0%로 인화된

경우 0%의 관세율을 유지하며 어떠한 관세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 철폐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으로 한국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일반품목군에 속한 상품의 최소 70%에 해당하는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며, 200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 품목의 95%를, 그리고 2010년 1월 1일까지 모든 일반품목군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ASEAN 6개국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일반품목군 관세품목의 최소 50%에 대해 관세율을 0~5%로 인하하며, 2009년 1월 1일까지 최소 90%에 대한 관세철폐, 그리고 2010년까지 모든 일반품목군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실시한다. 다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일반품목군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철폐 연장을 허용하게 된다.

베트남의 경우 ASEAN 6보다는 느슨한 적용을 받지만 다른 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보다는 타이트한 조건을 적용 받고 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2016년 1월 1일까지 모든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ASEAN 6과 같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한하여 2018년 1월 1일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CLM 국가들의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역시 5% 이내의 관세품목에 대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는 관세철폐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민감품목군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세품목의 수는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2004년도 기준으로 상대방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 상한선을 가지며, 베트남의 경우에는 수입액 기준에 있어 25%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품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의 한가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였다.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지는데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세품목은 한국 및 ASEAN 6 국가의 경우

(i) HS 6단위 200개 관세품목 혹은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에서는 모든 관세품목의 3%, 그리고

(ii) 2004년 무역통계 기준으로 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3% 이내로 최대 상한선을 적용받는다.

CMLV 국가들에게는 위의 조건 중 조건(i)만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되는 품목 수에 대한 상한선으로 작용한다.

일반민감품목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는 이들 상품에 대한 관세를 20% 이하로 인하해야 하는 중간점검 일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합의된 기한내에 0~5%로 인하해야 한다.

<표 2-8> 일반민감품목의 관세인하 일정

국가	20%로 인하	0~5%로 인하
한국 및 ASEAN6	2012년1월1일	2016년1월1일
베트남	2017년1월1일	2021년1월1일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2020년1월1일	2024년1월1일

자료: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주요내용」, 2007년

초민감품목은 A, B, C, D, E 등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며, 국가별로 관세인하 기간이 상이하다. 한국 및 ASEAN 6은 2016년, 베트남은 2021년,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는 2024년까지 각각의 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실행관세율을 A그룹은 50% 이하로, B그룹은 20% 이상 만큼, C그룹은

50% 이상 만큼 인하해야 한다. D그룹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D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수입에 대해 각각의 계획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최소수입물량을 적용하고 E그룹의 경우는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품목수를 HS 6단위 기준으로 최대 40개로 제한된다.

<표 2-9> 초민감품목군의 관세 인하 스케줄

구분	한국, ASEAN6	베트남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A그룹: 50% 관세율 상한을 적용하는 관세품목	2016년까지 50% 이하로 인하	2021년까지 50% 이하로 인하	2024년까지 50% 이하로 인하
B그룹: 20%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품목	2016년까지 20% 이상만큼 인하	2021년까지 20% 이상만큼 인하	2024년까지 20% 이상만큼 인하
C그룹: 50%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품목	2016년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2021년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2024년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D그룹: 최소수입량의 적용을 받는 관세품목	협정 발효 시부터 D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수입에 대해 각각의 계획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최소수입량을 적용		
E그룹: 관세양허에서 제외되는 관세품목	-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유지할 권리를 보유 - 각 당사국이 E그룹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품목의 수는 HS 6단위 최대 40개 관세품목에 한함		

자료: 한 · 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태국을 제외한 ASEAN 각국도 상품 모달리티(Modality) 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ASEAN 6개국과 CLMV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상품자유화방식에 따라 각각 양허안을 작성하였는데, 주요 국별로 보면, 말레이시아는 462개(113개), 인도네시아는 464개(156개), 필리핀은 350개(93개) 등의 품목을 각각 민감품목군(초민감품목)에 배치하였으며, 주로

한국 관심품목인 철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민감품목군(초민감품목)을 구성하고 있다.²¹⁾ 각 회원국별 양허안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한 · ASEAN FTA: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상한선 (한국 및 ASEAN 6)	품목수: 10% (HS6단위522개) 수입액: 10%	품목수: 200 (HS6단위) 수입액: 3%	품목수: 40 (HS6단위)
한국	품목수: 9.23%(482개) 수입액: 8.45%	품목수: 200개 수입액: 2.81%	품목수: 40개
말레이시아	품목수: 8.84%(462개) 수입액: 9.69%	품목수: 113개 수입액: 2.99%	품목수: 39개
인도네시아	품목수: 9.23%(464개) 수입액: 8.45%	품목수: 156개 수입액: 2.93%	품목수: 40개
필리핀	품목수: 6.7%(350개) 수입액: 9.97%	품목수: 93개 수입액: 3%	품목수: 40개
싱가폴	품목수: 0%(0개) 수입액: 0%	품목수: 0개 수입액: 0%	품목수: 0개
브루나이	품목수: 0.76%(40개) 수입액: 9.99%	품목수: 13개 수입액: 2.99%	품목수: 13개
베트남	품목수: 9.9%(517개) 수입액: 23.12%	품목수: 200개	품목수: 40개
캄보디아	품목수: 8.9%(465개)	품목수: 200개	품목수: 40개
라오스	품목수: 10.07%(526개)	품목수: 200개	품목수: 0개
미얀마	품목수: 7.52%(393개)	품목수: 200개	품목수: 40개

자료: 외교통상부, 「한 · ASEAN FTA 주요내용」, 2007년

21) 남풍우, 최준호, 「한 · 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2호, 2007

제3절 한 · ASEAN FTA 상품협정 이행현황

1. 한국의 대 ASEAN 수입활용률²²⁾ 분석

한국의 대 ASEAN 수입에 대한 활용률은 FTA가 발효된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의 발효 1년차와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의 발효 2년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SEAN과의 상품협정은 비준이 완료된 국가와 순차적으로 이행에 들어갔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4개국과는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고, 이후 필리핀이 비준을 마치고 2008년 1월부터 한 · ASEAN FTA를 발효하였다. 브루나이,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는 각각 2008년 7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부터 양자 간의 한 · ASEAN FTA가 발효되어, 2009년 8월말 현재 ASEAN 10개국 중 태국을 제외한 9개국에서 FTA가 발효되었다. 태국은 당초 국내 사정으로 인해 서명에 불참하였으나 2009년 2월 27일 ASEAN 정상회의에서 한 · ASEAN 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가. 발효 1년차 한 · ASEAN FTA 수입활용률: 국가별

22) 한 나라의 수입에 대한 활용률은 FTA 수입활용률로 그리고 수출에 있어 FTA 특혜관세 활용 비중을 기록한 것은 FTA 수출활용률이 된다. 이러한 활용률은 특정 FTA 혹은 무역협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활용률이 0%라는 것은 해당 FTA나 무역협정이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활용률이 100%라는 것은 특혜관세가 완벽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발효 1년차(2007년 6월1일~2008년 5월31일)의 국가별 한·ASEAN FTA 수입활용률은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가별 활용률을 비교해보면 대 미얀마 수입활용률이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 베트남 수입활용률도 58.6%로 발효 1년차 수입활용률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입활용률은 각각 47.3%와 32.3%였으며 필리핀은 15.1%로 해당 5개국 중 가장 낮은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필리핀이 15.1%라는 낮은 활용률을 기록한 데에는 발효 시기가 다른 4개국과 달리 2008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양국간 FTA 발효에 대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ASEAN FTA 발효 1년차 수입활용률은 38.0%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입활용률을 기록하였다.

<표 2-11> 한·ASEAN FTA 발효 1년차 수입활용률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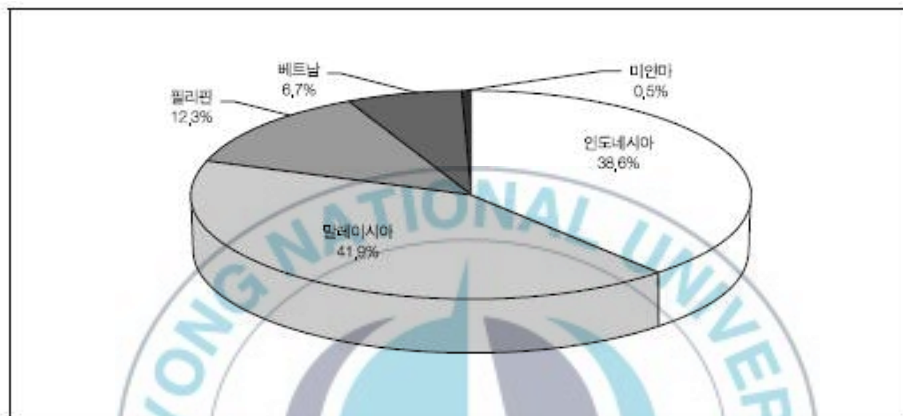
국가	특혜관세	일반관세	할당관세	최빈국 특혜 관세	기타	합계	활용 률
미얀마	78,209	14,147	-	1,852	0.0	94,209.1	83.0
베트남	709,915	436,746	64,197	-	0.9	1,210,859	58.6
인도네시아	3,304,779	946,672	2,736,587	-	-	6,998,573	47.3
말레이시아	2,453,933	3,079,012	2,057,034	-	4,513	7,594,493	32.3
필리핀	334,089	1,858,992	25,818	-	0.0	2,218,900	15.1
총계	6,880,926	6,335,571	4,883,638	1,852	4,514	18,107,036	38.0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2009, p.126

한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각각 41.9%와 38.6%로 전체 대상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2008년 1월~5월까지의 5개월간의 교역 기록만을 포함한 대 필리핀 수입 비중은 12.3%였다. 베트남과 미얀마의 경우는 전체 대상품목 수입의 각각 6.7%와 0.5%로 나타났다(<그림 2-3> 참고).

**<그림 2-3> 한·ASEAN FTA 1년차 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의
국가별 수입 비중**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2009, p.126

나. 발효 2년차 한·ASEAN FTA 수입활용률: 국가별

발효 2년차로 넘어오면서 양자간에 한·ASEAN FTA가 발효된 국가는 총 8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한·ASEAN FTA 수입활용률도 1년차의 38.0%에서 49.1%로 10%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ASEAN FTA가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한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수입활용률 급증이 2년차 활용률 상승을 견인하였다.

<표 2-12>를 보는 바와 같이 수입활용률 측면에서 한·ASEAN FTA 발효 1년차에 이어 발효 2년차에도 대 미얀마 수입활용률이 7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 베트남 수입활용률은 66.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발효 1년차에 비해 눈에 띄는 특징은 대 인도네시아 수입활용률의 상승을 들 수 있다. 발효 1년차에 47.3%를 기록했던 대 인도네시아 수입활용률은 2년차로 넘어오면서 63.5%로 1년 사이 15%이상 증가하였다. 발효 1년차에 5개월 간의 수입활용률만 측정된 필리핀의 경우 15.1%에서 2년차에는 38.2%를 기록하였고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수입활용률도 36.8%를 기록하여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년차에 새롭게 한·ASEAN FTA가 발효된 브루나이는 58.3%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수입활용률은 각각 6.2%와 1.2%로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12> 한·ASEAN FTA 발효 2년차 수입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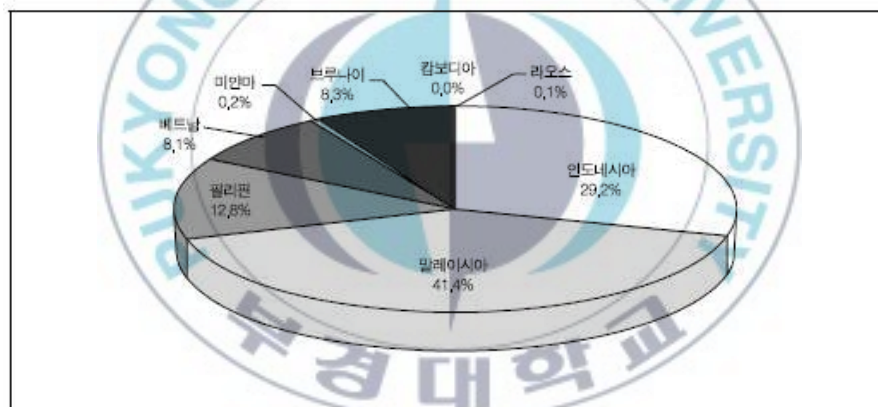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국가	특혜관세	일반관세	할당관세	최빈국 특혜관 세	기타	합계	활 용 률
미얀마	24,411.7	3,338.5	7.7	3,230.3	0.0	30,988.2	78.8
베트남	895,821.4	447,827.9	2,597.1	0.0	6.3	1,346,252.8	66.5
인도네시아	3,093,030.9	573,792.2	1,202,035.4	0.0	1,542.3	4,870,405.7	63.5
브루나이	811,361.5	14,883.1	564,271.5	0.0	0.0	1,390,516.1	58.3
필리핀	813,891.0	1,226,756.5	88,325.8	0.0	0.3	2,128,973.6	38.2
말레이시아	2,542,295.7	2,542,295.7	2,542,295.7	0.0	58.9	6,901,470.4	36.8
캄보디아	77.5	1,150.0	0.0	17.7	0.0	1,245.2	6.2
라오스	100.8	462.9	0.0	8,167.6	0.0	8,731.2	1.2
총계	8,180,990.4	4,409,567.7	4,075,001	11,415.9	1,607.9	16,678,583.3	49.1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2009, p.131

<그림 2-4> 총 8개국을 대상으로 한 발효 2년차 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의 국가별 수입에서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된 품목의 비중은 전체 해당 수입의 41.4%로 가장 높았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품목은 29.2%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필리핀 (12.8%), 브루나이 (8.3%), 베트남 (8.1%) 등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수입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ASEAN 후발 참여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에서 수입되는 품목이 전체 특혜적용 가능 품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한·ASEAN FTA 2년차 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의 국가별 수입 비중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2009, p.130

2. 한국의 대 ASEAN 수출실용률²³⁾ 분석

23) 수출 실용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국가로부터 수출된 총 수출액 중 수입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활용률과 달리, 실용률은 이미 무관세품목이거나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까지도 고려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실용률을 통해 FTA가 전체 교역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활용률이 100%에 가까운 경우라도 실용률이 20%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양국간 교역에서 FTA를 적용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 이라고 할 수 있다.

한·ASEAN FTA 발효 1년차인 2007년 6월 1일~2008년 5월 31일 기간은 한국과 FTA가 발효된 ASEAN 5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실용률을 측정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의 수출 실용률은 3.9%로 나타났다. ASEAN 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발효 2년차 실용률은 발효 1년차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2.6%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 발효 1년차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한·ASEAN FTA 수출 실용률이 2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인도네시아 1.28%, 베트남 0.89%, 미얀마 0.02%로 나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5개월 간의 교역을 분석한 필리핀은 0.03%의 수출 실용률을 보이고 있다. 발효 2년차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각각 4.2%와 3.2%를 기록하면서 성장률 면에서는 소폭 증가하여 3~4%대 실용률을 기록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 실용률은 1.5%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필리핀과 브루나이, 그리고 ASEAN 후발 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는 수출 실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13> 한·ASEAN FTA 수출실용률

(단위:%)

순번	국가	2007년 6월~2008년 5월	국가	2008년 6월~2009년 5월
1	말레이시아	22.9%	인도네시아	4.2%
2	인도네시아	1.28%	베트남	3.2%
3	베트남	0.89%	말레이시아	1.5%
4	필리핀	0.3%	필리핀	0.5%
5	미얀마	0.2%	캄보디아	0.4%
	라오스	-		0
	브루나이	-		0
	캄보디아	-		0
총합 계		3.9%		2.6%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 중심으로」, 2009, p.145

제III장 한 · 베트남 상품교역의 관세인하 영향

제1절 한 · ASEAN FTA에서 베트남 및 한국의 상품 양허안 내용

1. 한 · ASEAN FTA에서 베트남의 상품양허안 내용

제2장에서 정리한 한 · ASEAN FTA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에 따라
서 베트남의 상품양허안 계획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베트남의 상품양허안 계획



자료: 외교통상부, 「한 · ASEAN FTA 이행현황 -베트남-」, 2009년12월

<표 3-1>를 보면 한 · ASEAN FTA 베트남 양허안은 HS 10단위 기준
총 9,174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품목군에 7,656개, 일반민감품목

과 초민감품목군에 각각 715개, 803개 품목이 배치되어 있다. 베트남 양허안을 양허유형별 · 산업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SL, B, E 그룹에 배치된 품목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전기기계, 일반기계, 운송기기이며, 이들 산업에 대한 개방을 최대한 늦추려는 베트남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1> 베트남 양허안의 양허유형별 · 산업별 분류

(단위: 개)

구분	일반 품목군	민감품목군					***	합계
		SL	HSL					
			A	B	D	E		
1차산품	551				3			554
가공1차산품	536	15	45		18	17	3	634
가공광물	177	8		16	10			211
고무·화학	684	140		11			46	692
가죽제품	64							64
종이·목재	305	16		22				343
의류·식물	893	33	1	4				931
비금속광물	217	30	9					256
금속제품	404	101	8	90		7		610
일반기계	447	68	1	125		12		653
전기기계	363	179	6	56				603
운송기기	86	104	19	31		144		384
기타 운송기기	36	8						44
정밀기계	100	0						100
기타 제조품	228	13					7	248
합계	5,091	715	89	355	31	180	56	6,517

주: 1) HS 10단위 기준으로 총 9,174개 품목 중 무관세품목(2,541개)과 MFN 관세가 미입력된 품목(116개)을 제외한 뒤 품목을 분류한 것임.

2) ***표시 품목은 '일반예외품목(general exception products)'으로 분류된 품목임

자료: Kiep, 「한 · 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2009, pp.67

한편, 한 · ASEAN FTA 에 명시된 베트남 양허안의 특혜율²⁴⁾ 측정을 위해 무관세 품목 2,541개, 양허제외 품목 180개, D그룹 31개, 일반예외품

24) 특혜율(MOP: Margin of Preference)이란 품목별로 MFN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를 MFN 관세로 나눈 값을 평균하여 기록한 수치이다.

목(General exception products) 56개를 제외한 총 6,2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FTA 발효 직후부터 2014년까지 관세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2009년에 18%, 2011년에 29%, 2013년에는 35%에 불과하다가 2015년에는 77%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특혜율은 약 81%로 민감품목군에 속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는 2021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 한 · ASEAN FTA 상품 특혜율(베트남)

(단위: %)

구분	MOP 2007	MOP 2008	MOP 2009	MOP 2011	MOP 2013	MOP 2015	MOP 2016	MOP 2018
1차상품	0.31	14.28	28.16	44.83	57.23	95.79	100	100
가공1차상품	1.63	11.2	25.82	38.23	45.99	79.62	89.93	90.97
가공광물	0.00	0.52	5.2	11.99	12.56	87.94	88.06	88.56
고무 · 화학	0.16	3.68	9.88	20.38	22.98	79.79	80.27	84.72
가죽제품	0.32	5.88	11.5	19.02	23.23	88.91	92.27	93.36
종이 · 목재	0.00	5.99	17.2	29.81	35.4	84.77	88.92	90.18
의류 · 직물	3.59	18.59	36.38	49.08	59.58	79.94	95.92	95.57
비금속광물	0.64	6.77	14.94	23.68	23.68	80.58	84.77	90.3
금속제품	0.00	5.83	11.47	20.19	25.2	66.46	67	70.77
일반기계	0.00	3.74	9.09	17.73	21.06	69.62	69.73	71.94
전기기계	0.00	5.24	9.83	19.48	23.32	60.1	60.1	68.2
운송기기	0.00	2.57	8.17	14.9	17.75	35.83	35.83	50.58
기타 운송기기	0.00	0.00	8.18	20.45	20.45	81.82	81.82	81.82
정밀기계	0.00	10.42	24.58	38.6	48.22	92.5	100	100
기타 제조품	0.33	10.44	23.71	36.22	45.12	86.89	94.61	96.75
전 산업	0.78	8.44	18.23	29.16	35.32	76.66	81.45	84.65

주: 특혜율 측정 시 무관세인품목 2,541개, 양허제외 품목 180개, D그룹(TRQ 적용품목) 31개, 일반예외품목(General exception products) 56개를 제외한 총 6,25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

자료: Kiep, 「한 · 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2009, p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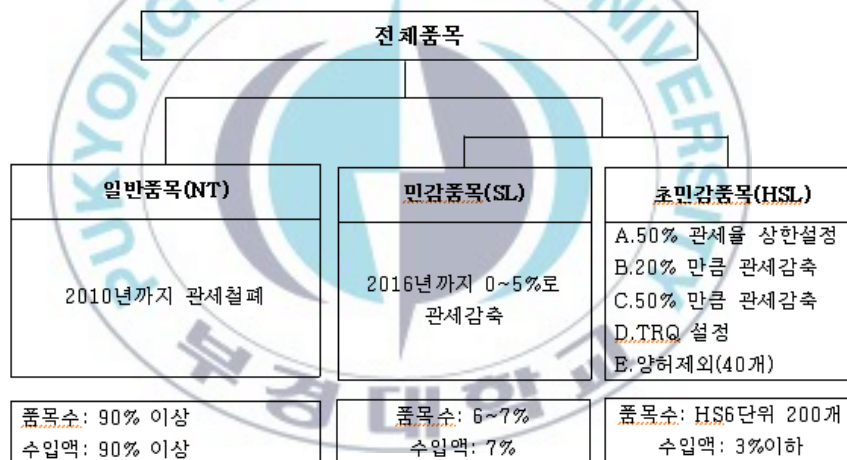
산업별로 개방 속도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산업의 개방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운송기기의 경우 2015년 특혜율이 약 40%, 2018년 특혜율이 약 51%를 기록하는 등 자유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운송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경우 2015년에 65~80%의 특혜율을 기록하는 등 개방 폭이 낮은 편은 아니라 속도 측면에서 보면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한 · ASEAN FTA에서 한국의 상품양허안 내용

제2장에서 정리한 한 · ASEAN FTA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에 따라서 한국의 상품양허안 계획은 <그림 3-2>과 같다.

<그림 3-2> 한국의 상품양허안 계획



자료: 외교통상부, 「한 · ASEAN FTA 이행현황 -베트남-」, 2009년12월

또한, 한 · ASEAN FTA에서 한국의 양허안 분석 대상에 포함된 품목 수는 HS 10단위 기준 으로 총 12,173개 품목중 11,202개 품목(92%)을 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품목은 민감품목군에 배치되어 있다. 한 · ASEAN FTA의 한국 양허안에서 관세인하 · 철폐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유형별 · 산업별로 분류하면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전체 품목의 약

57%에 달하는 총 5,819개이며, 이어 2008년과 2010년에 추가적으로 2,986개, 495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이로써 2010년까지 전체 품목의 약 90%에 해당되는 품목의 관세 철폐가 마무리된다.

한편 산업별로 살펴보면, FTA 발효 직후 고무·화학 산업의 즉시 철폐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기계, 가공광물, 금속제품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도 고무·화학 산업에 속한 품목의 관세철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류·직물산업 또한 대부분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목재, 기타제조품 등 2개 산업의 일반 품목군에 배치된 품목은 모두 2008년에 관세철폐가 마무리되었으며, 나머지 산업의 경우 2010년까지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품과 가공1차산품의 경우 한국 농산품의 민감성을 반영하듯이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품목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허제외품목에 배치된 품목수의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의 자유화가 가장 더디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3-3> 한국의 양허안의 양허 유형별·산업별 분류

(단위: 개)

구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합계
	NT (즉시철폐)	NT 2008	NT 2010	SL	HSL						
					A	B	C	B+ D	D	E	
1차산품	259	239	68	106	5	108	6	1	10	65	867
가공1차산품	218	269	80	89		93	24	1	2	25	801
가공광물	596	54	26	23							699
고무·화학	1,439	805	81	74		7	4				2,410
가죽제품	145	85	12								242
종이·목재	57	123		128		25				4	337
의류·직물	446	723	122	83							1,374
비금속광물	291	113	13	9							426
금속제품	546	59	4	1							610
일반기계	807	102	40	9							958

전기기계	336	162	31	6							535
운송기기	62	98	7	19							186
기타 운송기기	68	1	2								71
정밀기계	332	91	9								432
기타 제조품	217	62		1							280
합계	5,819	2,986	495	548	5	233	34	2	12	94	10,228

주: 무관세품목 및 TRQ 적용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분류한 것임

자료: Kiep,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2009, pp.79

무관세품목, 양허제외품목 및 TRQ 적용품목을 제외한 총 10,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 양허안의 상품특혜율을 측정해보았다. 한·ASEAN FTA 발효 직후 특혜율이 약 67%로 ASEAN 회원국과 비교해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0년에 약 91%를 기록한 뒤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약 95%의 높은 특혜율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별로 상품 특혜율을 비교해보면 기타 운송기기, 정밀기계산업의 경우 2009년에 이미 특혜율이 100%를 기록하여 관세철폐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 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이·목재, 1차산품, 가공1차산품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모두 93%이상의 높은 특혜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3-4> 한·ASEAN FTA 상품 특혜율(한국)

(단위: %)

구분	MOP 2007	MOP 2008	MOP 2009	MOP 2010	MOP 2012	MOP 2014	MOP 2016
1차산품	48.69	68.4	69.9	71.53	74.03	74.03	84.32
가공1차산품	42.95	64.04	69.41	71.57	74.38	74.38	83.76
가공광물	85.41	94.83	96.71	96.71	96.71	96.71	96.99
고무·화학	66.81	94.67	96.29	96.29	96.29	96.29	97.11
가죽제품	73.9	98.13	99.8	100.00	100.00	100.00	100.00
종이·목재	11.85	43.15	43.15	43.15	43.15	43.15	64.86
의류·직물	51.76	90.04	91.97	93.96	93.96	93.96	96.65

비금속광물	76.52	96.74	97.89	97.89	97.89	97.89	98.68
금속제품	92.79	99.59	99.84	99.84	99.84	99.84	99.9
일반기계	83.34	97.3	99.00	99.00	99.00	99.00	99.44
전기기계	75.85	96.71	98.88	98.88	98.88	98.88	99.39
운송기기	50.36	88.37	89.78	89.78	89.78	89.78	93.62
기타 운송기기	96.3	98.0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정밀기계	85.01	99.2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기타 제조품	85.8	99.64	99.64	99.64	99.64	99.64	99.78
전 산업	66.97	89.26	90.78	91.35	91.35	91.35	94.76

자료: Kiep,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2009, pp.80

3. 한국입장에서 한·ASEAN FTA의 긍정적인 효과

한·ASEAN FTA가 가지는 첫 번째 의의로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을 들 수 있다.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다. 1992년 이후 한국 대외 총 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총 해외투자에서 대 ASEAN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다. 또한 1997~98년의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ASEAN 국가들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ASEAN 시장이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ASEAN FTA는 ASEAN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부문 FTA는 이미 지난 2005년7월 발효되었다. 중·ASEAN FTA를 통해 중국과 ASEAN의 경제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과 ASEAN간의 분업체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산 제품은 ASEAN 시장 내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한·ASEAN FTA의 경우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더욱이 중·ASEAN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과 달리,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되는 초민감품목군에 품목 기준 및 수입액 기준 3%의 상한선을 두어 ASEAN으로부터 수입은 적으나 한국의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에 시장개방의 여파로부터 보호하고, ASEAN에 대한 한국 수출액이 많은 ASEAN의 공산품시장보호는 제한할 수 있도록 상품자유화 방식을 설계하였다. 이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인하에 소극적인 ASEAN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ASEAN FTA에 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 제품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의 경우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 추진은 국내적 필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한·ASEAN FTA 체결은 일본에 비해 한발 앞서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상품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전의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나 EFTA와는 달리 ASEAN 국가의 주력 품목은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정형화된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²⁵⁾

제2절 한 · 베트남의 상품교역에 관세인하의 영향

지난 1992년 한국과 베트남간의 수교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양국 간 교역은 1990년대 연평균 19%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1년 이후 베트남이 신흥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진출로 인해, 교역규모가 2001년 이후 연평균 22.5%의 고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었다. 최근 2007년 6월에 한 · ASEAN FTA 결과로 베트남과 한국간의 교역량이 대폭 증가하고 수출입변화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1. 양국 교역량 급증

한국과 베트남은 1983년부터 소규모의 간접교역이 시작되었으며, 1992년부터 양국의 수교관계를 설립한 이후에는 교역량이 점차 확대되었다.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량은 수교 이후 급증하여 2003년 20억 달러에서 2006년 약 49억 달러로 4년 만에 약 63% 교역액이 증가하였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은 항상 무역흑자였다. 베트남은 총 교역 규모 면에서는 ASEAN 6중 낮은 편에 속하나 무역 수지 흑자 면에서는

25) 구아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기준 대 싱가포르의 36억 달러흑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3-3>을 보면 '04, '05, '06년에 한국과 베트남 교역량이 각각 39억 달러(2004), 41억 달러(2005), 48억 달러(2006) 이었고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2007년 6월에 한·ASEAN FTA 상품협상의 발효됨으로써 품목별 관세특혜적용과 동시에 한국·베트남 양국의 교역량이 활발해져왔다. '04, '05, '06년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증가율은 각각 27.1%, 5.4%, 14.5% 이었는데 2007년에 57억 달러로 47%까지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 베트남 수입 증가율은 각각 31.8%, 3.1%, 33.3% 이었는데 2007년에 13억 달러로 무려 50.5%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3-3> 연도별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동향



자료: KOTRA, 「2010년도 한-베트남 무역동향」, 2011.01.24

이러한 대폭 상승세의 결과로 2008년 말부터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양국 간의 교역량이 98억 달러('07년 대비 약 35.5%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화로 인해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소폭 하락세('08년 대비 약 -8.4%하락)를 보였는데 한국의 대 베트남 수입은 약 16.3%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양국의 총 교역량이 95억 달러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2010년에 양국의 교역량은 증가세를 회복하면서 129억 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수출이 약 35% 증가하고 수입이 약 40.6% 증가해 나가서 대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표 3-5> 연도별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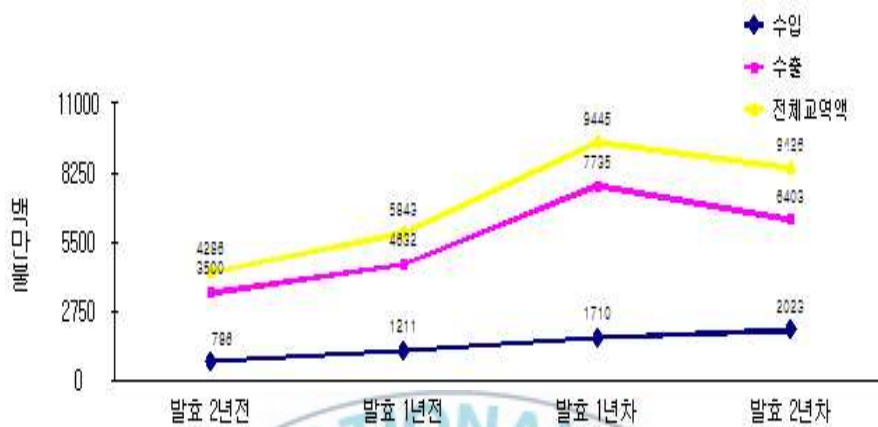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3,256 (27.1)	3,432 (5.4)	3,927 (14.5)	5,760 (46.7)	7,804 (35.5)	7,149 (-8.4)	9,652 (35)
수입	673 (31.8)	694 (3.1)	925 (33.3)	1,392 (50.5)	2,037 (46.4)	2,369 (16.3)	3,331 (40.6)
무역수지	2,583	2,738	3,002	4,368	5,767	4,780	6,321

자료: KOTRA, 「2010년도 한-베트남 무역동향」, 2011.01.24

그리고 한국의 대 베트남 무역흑자가 2010년 6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중국(452억달러), 홍콩(233억달러), 미국(94억달러), 싱가포르(73억달러), 멕시코(73억달러)에 이어 6번째 규모로 나타났다. 대 베트남 무역흑자는 63억 달러에 이르러 동남아시아 1위 싱가포르가 중개무역 중심이라 사실상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상품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가 된 셈이다.

또한 <그림 3-4>를 보면 양국간 FTA가 발효된 후 2년간 ('07.7 ~ '09.6) 교역액은 179억 달러로 발효 전 2년간 ('05.7 ~ '07.6)의 101억 달러에 비하여 76%가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전체 교역액 증가율 20%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교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림 3-4> 한 · 베트남 교역 동향



자료: 한국 관세청 보도자료, 「한 · 베트남 FTA 발효 후 2년, 교역량 대폭 증가」, 2009년 7월

그리고 교역수지를 보면, 발효 전 1년간 34억 달러 흑자를 보이던 것이 발효 후 1년간 60억 달러로 늘어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년차에는 글로벌 경제위가 영향 때문에 44억 달러로 1년차에 비해 줄어들었다.

2. 베트남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변화

2006년에 한 · ASEAN FTA가 발효되지 않을 시 한국은 베트남의 제11위 수출대상국이고 제5위 수입대상국이었다. 다만, 2010년에 한 · ASEAN FTA 발효 3년 이후 한국은 베트남의 제4위 수출 대상국이며 제2위 수입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 2006년 9월까지 미국은 베트남의 수출량에서 각각 49억 달러, 59억 달러로 연속적으로 베트남의 제1위 수출대상국이며 이 뒤에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독일, 말레이시아, 영국, 대만, 태국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은 2004~2006년 9월에 베트남의 수출량에서 각각

604백만 달러, 631백만 달러, 605백만 달러에 불과해 베트남의 제11위 수출 대상국이었다. 다만, 2007년 6월 한 · ASEAN FTA 발효됨으로써 베트남의 대 한국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한국이 독일,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베트남의 7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표 3-6>에서 2007년~2009년 한국은 미국(1위), 일본(2위), 중국(3위), 스위스(4위), 호주(5위), 싱가포르(6위)에 이어 제7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한국 수출액이 3,058백만 달러에 달해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제4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표 3-6>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2007~2010)

(단위: 백만 달러)

순번	국명	2007	2008	2009	2010
1	미국	10,090	11,869	11,356	14,168
2	일본	6,070	8,538	6,292	7,677
3	중국	3,357	4,536	4,909	7,264
4	한국	1,253	1,784	2,064	3,058
5	호주	3,557	4,225	2,277	2,686
6	스위스	236	517	2,486	2,117
7	싱가포르	2,202	2,660	2,076	2,326
8	말레이시아	1,390	1,955	1,682	2,063
9	필리핀	965	1,825	1,462	1,703
10	네덜란드	-	-	-	1,661

자료: KOTRA, 「2010년도 베트남의 대외교역동향」, 2011.02.28

베트남의 대 한국 수입에 있어서는 2004년~2006년까지 한국은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 이어 베트남의 5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수입량이 각각 33억 달러('04), 36억 달러('05), 39억 달러이었다. 하지만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6월 한 · ASEAN FTA 발효로 2007년~2009년까지 한국은 대만, 싱가포르를 제치고 베트남의 3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입량이 2009년에 69억 달러부터 2010년에 95억 달러까지 증가함에 따라 제2위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베트남 수

입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점유율은 2007년 10.9%에서 2010년 14.5%로 증가하였다. 한국상품의 2007년~2008년에 점유율은 중국, 일본, 대만 등과 못미치고 있었다. 중국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2004년 1월 발효된 EHP(Early Harvest Program)와 2005년 7월 발효된 중국·ASEAN FTA의 효과로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베트남투자 붐이 일면서 투자 관련 원부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고성장 지속에 따른 소비재 수입수요의 증가도 일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베트남 투자증가에 따른 현지 일본기업들의 원부자재 수입증가로 수출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 일·ASEAN FTA가 발효되었고 2009년 10월부터는 일·베트남 경제연대협정(JVEPA)도 발효되어 일본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를 위시한 주변 ASEAN 국가들의 경우 투자증가에 따른 수출유발효과와 역내 경제통합의 심화로 베트남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들의 대 베트남 수출은 소폭하락세를 보였는데 2010년에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베트남에 수출량을 급히 회복되며 일본, 대만을 제쳐 베트남시장에서 점유율을 14.5%로 차지하고 있다.

<표 3-7>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2007~2010)

(단위: 백만 달러, %)

순 번	국명	2007		2008		2009		2010		
		금액	점 유 율(A)	금액	점 유 율	금액	점 유 율	금액	점 유 율(B)	점 유 율 변 동 (B-A)
1	중국	12,502	25.5	15,652	25.0	16,441	30.1	19,920	30.3	4.8
2	한국	5,334	10.9	7,066	11.3	6,976	12.8	9,567	14.5	3.7
3	일본	6,178	12.6	8,241	13.1	7,468	13.7	8,969	13.6	1.0
4	대만	6,917	14.1	8,363	13.3	6,253	11.5	6,932	10.5	-3.6
5	태국	3,737	7.6	4,906	7.8	4,514	8.3	5,558	8.5	0.8

6	싱가포르	7,609	15.5	9,393	15.0	4,248	7.8	4,075	6.2	-9.3
7	미국	1,700	3.5	2,635	4.2	3,009	5.5	3,718	5.7	2.2
8	말레이시아	2,290	4.7	2,596	4.1	2,508	4.6	3,399	5.2	0.5
9	인도네시아	1,354	2.8	1,729	2.8	1,546	2.8	1,897	2.9	0.1
10	인도	1,357	2.8	2,094	3.3	1,635	3.0	1,737	2.6	-0.1
	총계	48,978	100.0	62,675	100.0	54,598	100.0	65,772	100.0	0.0

자료: KOTRA, 「2010년도 베트남의 대외교역동향」, 2011.02.28

3. 한국 무역에서 베트남의 위상변화

지난 1992년 한·베트남 수교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양국 간 교역은 90년대 연평균 19%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1년 이후 베트남이 신흥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진출로 인해, 교역 규모가 2001년 이후 연평균 22.5%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006년, 2007년에는 33.3%, 50.5%의 큰 폭의 성장세를 각각 기록했고 2008년에는 4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2009년에는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불황의 여파로 소폭 하락했으나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한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부상하며,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태이다.

대 베트남 수출은 2007년 46.7%의 증가세로 경쟁국인 태국, 필리핀, 호주, 이탈리아를 제치고 한국의 제13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한데 2008년에는 35.5%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제10위로 기록했다. 2008년 말의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비중이 -8.4%로 소폭 하락했으나 베트남은 한국의 10위 수출대상국을

유지한 상태였다. 특히 2010년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금액이 크게 확대되며, 베트남은 한국의 제9위 수출대상국으로 나타났다.

<표 3-8> 2008~2010년 한국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91,388	11.5	86,703	-5.1	116,838	34.8
2	미국	46,376	1.3	37,650	-18.8	49,816	32.3
3	일본	28,252	7.1	21,770	-22.9	28,176	29.4
4	홍콩	19,771	6	19,661	-0.56	25,294	28.7
5	싱가포르	16,292	36.3	13,616	-16.4	15,244	11.9
6	대만	11,461	-12	9,501	-17.1	14,830	56
7	독일	10,522	-8.8	8,013	-23.8	11,435	42.7
8	인도	8,977	36	8,821	-1.7	10,702	21.3
9	베트남	7,804	35.5	7,149	-8.4	9,652	35
10	인도네시아	7,933	37.5	5,999	-24.4	8,897	48.3

자료: KOTRA, 「2010년도 한-베트남 무역동향」, 2011.01.24

한편 <표 3-9>에서 한국의 대 베트남 수입은 2007년, 2008년에는 제31위로 기록했으나 2009년과 지난해에 제28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약 0.05%에서 0.08%로 증가했다.

<표 3-9> 베트남이 차지하는 한국 교역 위상 변화

년도/교역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17위	18위	17위	13위	10위	10위	9위
수입	35위	35위	35위	31위	31위	28위	28위

자료: KOTRA, 「2010년도 한-베트남 무역동향」, 2011.01.24

또한, 한국과 ASEAN 회원국별 양자간 수출에서는 <표 3-10>를 보는 바와 같이 한·ASEAN FTA 발효 2년 전 베트남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서 한국의 5위, 4위 수출대상국으로 나타났으나 FTA 발효 2년 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제쳐 한국의 2위, 3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증가율은 FTA 이전 30%부터 FTA 이후 62.3%로 폭증세를 보인다. 그런데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다른 아세안 국가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한국 수출은 11%로 인하되었으나 베트남은 한국의 대 ASEAN 수출국가 중에는 3위 대상국을 유지한 상태였다.

<표 3-10> 한·ASEAN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ASEAN 국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2005년 6월~2006년 5월			2006년 6월~2007년 5월			2007년 6월~2008년 5월			2008년 6월~2009년 5월		
	국가	금액	증가 율	국가	금액	증가 율	국가	금액	증 가 율	국 가	금액	증가 율
1	싱가포르	8,320	34.9	싱가포르	10,737	29.1	싱가포르	13,998	30.4	싱가포르	14,210	1.5
2	말레이시아	4,758	4.6	인도네시아	5,653	19.8	베트남	7,385	62.3	인도네시아	7,002	10.8
3	인도네시아	4,718	14.3	말레이시아	5,410	13.7	인도네시아	6,318	11.8	베트남	6,569	-11.0
4	태국	3,644	9.6	베트남	4,550	30.0	말레이시아	5,926	9.5	태국	5,018	1.3
5	베트남	3,499	7.2	태국	4,434	21.7	태국	4,955	11.8	말레이시아	4,834	-18.4
6	필리핀	3,445	7.2	필리핀	4,008	18.7	필리핀	4,867	19.1	필리핀	4,559	-6.3
7	캄보디아	161	19.3	캄보디아	234	45.3	캄보디아	314	34.2	미얀마	335	25.5
8	미얀마	116	-6.5	미얀마	162	39.7	미얀마	267	64.8	캄보디아	263	-16.2
9	브루나이	37	-32.7	라오스	34	112.5	라오스	63	85.3	브루나이	82	148.5
10	라오스	16	45.5	브루나이	25	-32.4	브루나이	33	32.0	라오스	45	-28.6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2009, p.92

게다가 <표 3-11>를 볼 듯이 한국의 대ASEAN 국별 수입의 경우 FTA 발효 2년차까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베트남이 한국 전체 수입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발효 2년차에는 캄보디아, 브루나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한국 전체 수입보다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중계무역항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고,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많아 국내로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이 FTA 발효 전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에 이어 한국의 6위 수입국가로 나타나며 한국으로 수출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ASEAN 국가들은 한국으로 수출금액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베트남은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 수출금액이 한국의 6위 수입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17.4%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표 3-11> 한·ASEAN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ASEAN 국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2005년 6월~2006년 5월			2006년 6월~2007년 5월			2007년 6월~2008년 5월			2008년 6월~2009년 5월		
	국 가	금 액	증 가 율	국 가	금 액	증 가 율	국 가	금 액	증 가 율	국 가	금 액	증 가 율
1	인도 네시 아	8,762	27.2	인도 네시 아	8,818	0.6	인도 네시 아	11,027	25.1	인도 네시 아	8,976	-18.6
2	말레 시아	6,447	7.9	말레 시아	7,929	23.0	말레 시아	9,155	15.5	말레 시아	8,651	-5.5
3	싱가 포르	5,770	24.7	싱가 포르	6,175	7.0	싱가 포르	7,773	25.9	싱가 포르	7,980	2.7
4	태국	3,019	27.5	태국	3,603	19.3	태국	3,819	6.0	태국	3,944	3.3
5	필리 핀	2,217	0.2	필리 핀	2,258	1.8	필리 핀	2,768	22.6	필리 핀	2,818	1.8

6	브루 나이	1,046	45.5	베트 남	1,140	49.0	베트 남	1,693	48.5	베 트 남	1,987	17.4
7	베 트 남	765	15.4	브루 나이	1,020	-2.5	브루 나이	1,232	20.8	브루 나이	1,566	27.1
8	미얀 마	87	180.6	미얀 마	102	17.2	미얀 마	119	16.7	미얀 마	53	-55.5
9	라우 스	6	0.0	라오 스	47	683.3	라오 스	49	4.3	라오 스	39	-20.4
10	캄보 디아	5	-16.7	캄보 디아	8	60.0	캄보 디아	9	12.5	캄보 디아	15	66.7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 · 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2009, p.92

4. 양국의 산업별 상품교역변화

베트남은 최근 한국의 투자진출이 급증하고 있고 투자와 연계된 원부자재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한 · ASEAN FTA 발효 1년 전에는 30% 증가했다가 FTA 발효 1년차에는 62,3%나 급증하였다. FTA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발효 2년차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의 수출 및 해외투자 부진으로 11% 감소하였다. 산업별로 대 베트남 수출을 살펴보면, 1차산품과 가공 1차산품은 분석기간 내내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는데, 특히 FTA 발효 이후로는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외에도 20.8%로 최대 비중(발효 2년차 기준)을 차지하는 의류 · 직물도 FTA 발효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31.6%와 6.4%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3-12> 한 · ASEAN FTA 발효 전후 대 베트남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2005년 6월 ~ 2006년 5월	2006년 6월 ~ 2007년 5월	2007년 6월 ~ 2008년 5월	2008년 6월 ~ 2009년 5월	비중 2008년 6월 ~ 2009년 5월
1차산품	21.4	52	112.7	91.7	0.4
가공1차산품	24.6	39.5	68	11.9	0.8
가공광물	5.2	85.7	105.7	-27	20
고무 · 화학	4.6	24.1	49.6	-0.7	14.7
가죽제품	-4.7	5.7	6.9	2.4	1.6
종이 · 목재	2.3	-4.9	28.4	-8.7	1.2
의류 · 직물	9.2	6.4	31.6	6.4	20.8
비금속광물	-1.2	1.7	17.1	1.3	0.5
금속제품	19.2	67	51.2	-10.5	13.4
일반기계	5.2	21.8	66.2	0.2	10.5
전기기계	9.7	35.4	-5.7	-14.6	5.8
기타	-16.9	626.2	1,714.9	-43.1	0.2
운송기기	-37.7	-9.9	294.7	-35.8	7.7
정밀기계	-27.8	22.2	89.1	87	1.1
기타 제조품	19.7	11.1	19.4	9.9	1.3
미준류	0.0	0.0	0.0	0.0	0.0
합계	3.1	30	62.3	-11	100

주: 비중은 FTA 발효 2년차(2008년 6월~2009년 5월)에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함

자료: KIEP, 「한 · 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2009년 12월.

한편 베트남의 대 한국 주요 수입 품목은 베트남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 추진 등 건축, 건설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설비류 및 원부자재 그리고 한국의 투자기업 생산과 관련한 직물 등 섬유봉제 원부자재, 광물성연료,

수송 및 산업용 기계류,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이다.

베트남의 대 한국수입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 <표 3-13>에서 베트남의 대 한국 수입 품목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자동차가 '05.7~07.6'의 수출 금액이 419백만 달러뿐이었는데 '07.7~09.6'까지 1,375백만 달러로 328%의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최대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철강 1,019백만 달러 (263%), 편직물 1,037백만 달러 (193%), 기계 · 컴퓨터 1,375백만 달러 (177%) 등 큰 증가세가 이뤄졌다. 그리고 수입금액별로 석유제품은 최대 수입품으로 부상하며 이어서 기계 · 컴퓨터 , 자동차, 편직물, 플라스틱제품, 철강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제품은 베트남 정부의 내수확대를 위한 자동차 부가세 및 등록비 경감에 따른 최대 수혜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국 투자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철강관, 금속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등의 원부자재 도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섬유관련 기업의 생산 확대로 편직물, 원부자재의 수요 또한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3> 베트남의 대 한국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발효 전 2년 (05.7~07.6)		발효 후 2년 (07.7~09.6)		발효전후 대비
	품목	금액(단위)	품목	금액(단위)	
1	석유제품	1,275	석유제품	3,041	239%
2	기계·컴퓨터	778	기계·컴퓨터	1,375	177%
3	자동차	419	자동차	1,375	328%
4	편직물	550	편직물	1,061	193%
5	플라스틱제품	628	플라스틱제품	1,037	165%
6	철강	387	철강	1,019	263%
7	전기제품	829	전기제품	839	101%
8	화학단섬유	325	화학단섬유	356	110%
9	철강제품	227	철강제품	280	123%
10	도포직물	252	도포직물	274	109%

자료: 한국 관세청, 「보도자료」, 2009.7.22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업종별 증가율이 여타 국가와는 다르게 대부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의류·직물, 1차산품, 금속제품, 가공 1차산품, 종이·목재제품 등은 발효 2년 전부터 발효 2년차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공광물, 기타 운송기기는 발효 1년 전부터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져 발효 2년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 베트남 수입은 FTA 발효 직후부터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발효 2년차 수입증가율이 17.3%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본국으로 역수출을 많이 하는 것과 함께 한·ASEAN FTA 효과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4> 한 · ASEAN FTA 발효 전후 대 베트남 산업별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2005년 6월 ~ 2006년 5월	2006년 6월 ~ 2007년 5월	2007년 6월 ~ 2008년 5월	2008년 6월 ~ 2009년 5월	비중 2008년 6월 ~ 2009년 5월
1차산품	14.5	34.3	29.1	12.3	19.2
가공1차산품	11.6	29.9	23.8	28.9	4.8
가공광물	-18.7	257.0	98.1	4.8	17.4
고무 · 화학	39.1	31.1	34.3	-6.3	5.2
가죽제품	0.8	6.7	19.6	13.2	1.3
종이 · 목재	66.8	66.1	10.9	48.1	2.9
의류 · 직물	24.9	36.9	40.7	28.6	26.5
비금속광물	8.4	-0.3	-4.4	21.9	1.1
금속제품	59.2	114.1	182.2	63.2	5.8
일반기계	37.4	61.7	56.3	-23.0	1.6
전기기계	-21.2	34.2	100.4	-4.7	7.1
기타 운송기기	-50.0	60.5	148.7	7,816.6	2.0
운송기기	106.1	-1.6	378.3	147.8	0.4
정밀기계	84.9	123.6	75.1	13.6	0.5
기타 제조품	39.2	31.6	7.5	6.8	4.3
미분류	0.0	0.0	0.0	0.0	0.0
합계	15.1	49.3	48.6	17.3	100

주: 비중은 FTA 발효 2년차(2008년 6월~2009년 5월)에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함

자료: KIEP, 「한 · 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2009년 12월.

그리고 베트남의 대한민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 다음<표 3-15>를 보는 바와 같이 한 · ASEAN FTA 발효 2년 전후에 베트남의 대 한국 수출 품목별의 수출금액은 어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뒤에

원유, 전기제품, 석탄, 신발류 등이다. 수출증가율별로 원유가 '05.7~07.6'의 수출 금액이 122백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년 이후 '07.7~09.6'의 수출 금액이 370백만 달러에 달해 증가율 303%의 증가세가 보였다. 그 다음에 전기제품 219%, 의류 217%, 화학단섬유 190% 및 원두커피 18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 베트남의 대 한국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발효 전 2년 (05.7~07.6)		발효 후 2년 (07.7~09.6)		발효전후 대비
	품목	금액(단위)	품목	금액(단위)	
1	어류	327	어류	478	146%
2	원유	122	원유	370	303%
3	전기제품	134	전기제품	294	219%
4	천연고무	101	석탄	241	-
5	신발류	148	신발류	239	161%
6	의류	109	의류	237	217%
7	원두커피	92	원두커피	170	185%
8	화학단섬유	75	화학단섬유	143	190%
9	가구	113	가구	143	127%
10	동물성제품	83	면사	129	-

자료: 한국 관세청, 「보도자료」, 2009.7.22

5. FTA 특혜관세 적용동향

수출국별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은 <표 3-16>에 정리되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 ASEAN 수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은 발효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오면서 6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국가별)

(단위: 달러)

순번	국가	발효 1년차	국가	발효 2년차
1	말레이시아	1,356,128,029	인도네시아	294,895,113
2	인도네시아	80,817,287	베트남	212,672,413
3	베트남	65,850,315	말레이시아	71,327,927
4	필리핀	1,244,439	필리핀	21,624,997
5	미얀마	51,515	캄보디아	633,384
6	브루나이	-	미얀마	66,293
7	라오스	-	브루나이	10,270
8	캄보디아	-	라오스	0
합계		1,504,091,585		601,230,396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2009, p.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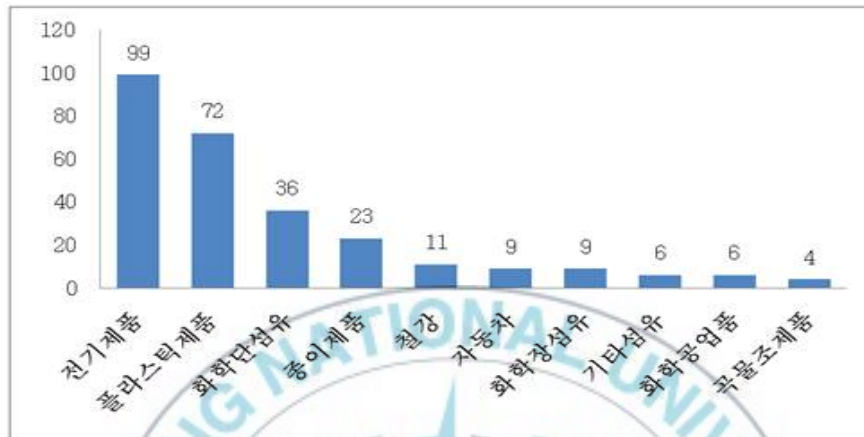
발효 1년차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 수출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약 66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발효 2년차에는 인도네시아와 같이 말레이시아를 제쳐 2.1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출에 대한 발효 2년차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2.9억 달러로 전체 발급액의 4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수출에 대한 2년차 발급액이 2.1억 달러로 35.4%를 차지하였다. 발급액 증감율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수출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은 발급액 기준으로 각각 264.9%와 223%가 늘어났다.

또한 한·ASEAN 발효 후 2년간 베트남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수출액은 2.1억 달러이며,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한국에서 특혜를 적용받은 금액은 17억 달러이었다.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금액 보다 4배 가까이 적은데도, 수입물품에 제공한 특혜가 6배 이상 많은 것은 한국의 관세인하 일정이 개도국인 베트남 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특혜를 받는 한국 수출품은 전기제품(99백만 달러)이며, 다음으로 플라스틱제품(72백만 달러), 화학단섬유(36백만 달러), 종이제품(23백만 달러), 철강(11백만 달러) 등이

있고,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특혜적용 실적의 84% 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3-5> 특혜관세 적용 상위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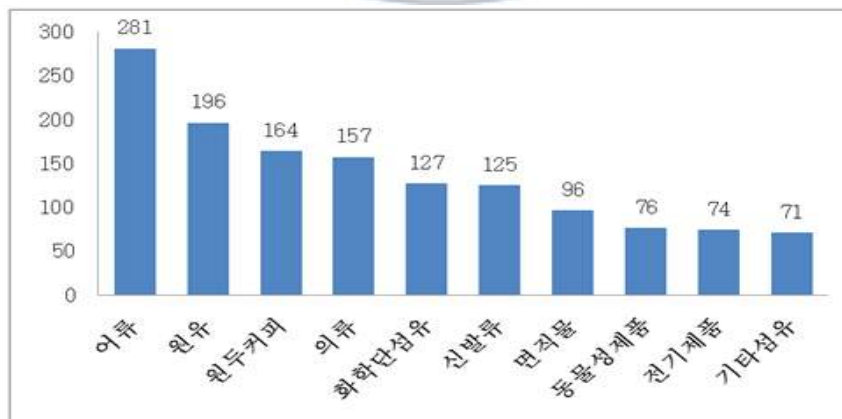


자료: 한국 관세청, 「보도자료」, 2009.7.22

한편,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특혜관세를 가장 많이 적용받은 것은 어류(281백만 달러)이며, 다음으로 원유(186백만 달러), 원두커피(164백만 달러), 의류(157백만 달러) 등이 있고,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특혜적용 실적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3-6> 특혜관세 적용 상위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 관세청, 「보도자료」, 2009.7.22

제IV장 한 · 베트남 상품교역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제1절 한 · 베트남 상품교역의 문제점

베트남은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고도 성장세를 지속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이 한국 상품을 선호하게 된 것도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된 요인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경제 · 정치 여건상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래서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제도의 문제점

가. 관세율의 변화

한 · ASEAN FTA 관세 인하계획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2005년 1월 1일인데 반해, 2007년 1월 11일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MFN 관세를

대폭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2007년 적용될 한·ASEAN FTA 수입관세율은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MFN(최혜국대우) 수입관세율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원단(Fabric)의 경우 WTO 가입 후 적용하는 현재 MFN 관세는 12%로 가입 전 40%보다 대폭 낮아졌고, 한·ASEAN FTA는 가입 전 40%보다 낮은 30%로 낮아졌으나 현재의 12% 보다 높으므로 베트남의 MFN 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매년마다 수입관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므로 매년 수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기업은 베트남 관세율과 FTA관세율을 항상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24일부로 111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하였다. 총 111개 품목(베트남 측 HS 10단위 농산물 50개, 공산품 61개) 중에는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은 5%에서 최대 40%까지 인상됐고 농산물은 14~40%까지 인상되었다. 주요 품목으로는 냉장고 일부가 40%, 진공청소기 31%, 녹음기 29~35%, 공기조절기 27%, 가열난방기 7~24%, TV카메라 15%로 각각 인상됐다. 농산물로는 그레이프푸르트(신선, 건조) 및 닭고기 통조림 14~40%, 파스타, 소·양고기 통조림, 과일주스, 토마토(저장처리) 29~38%, 초콜릿·코코아 가공품 18~25%, 기타 식용 설육(고래 고기 등) 14%로 각각 인상되었다.

한·ASEAN FTA가 이미 발효 중에 있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총 111개 품목 가운데 39개 품목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현행관세가 한·ASEAN FTA 적용 시 베트남 수입관세보다 높을 경우는 금번 관세 인상에 영향이 없지만 베트남 현행관세가 한·ASEAN FTA 적용 시 베트남 수입관세보다 낮을 경우는 금번 관세인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제품은 관세가 15%에서 17%로 인상됐는데 인상 전 베트남 현행관세가 15%이고 한·ASEAN FTA 관세가 20%라면

한국 적용관세가 15%로 적용되었다. 다만 베트남 관세 인상 후 베트남 현행 관세가 17%이고 한·ASEAN FTA 관세 20%라면 한국은 17%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처럼 관세인상의 영향을 받을 39개 주요 품목을 보면 플라스틱 제품(HS코드 3926 2개 품목)이 2% 인상(15~17%), 공기조절기(HS코드 8415 11개품목)가 2% 인상(25~27%), TV카메라(HS코드 8525 2개 품목)가 3% 인상(12~15%), 면도기(HS 코드 8212 3개 품목)가 3% 인상(17~20%), 가열난방기(HS코드 7321 4개 품목)가 1% 인상(17~18%) 되었다.

<표 4-1>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품목의 베트남 관세 인상
현황

번호	베트남 HS 코드(10단위)	베트남 관세인상 내용			한·ASEAN FTA 감안시			
		인상된 관세율 (%)	2010 MFN (%)	인상폭 (%)	AKFTA A 2010년 양허관 세 (%)	인상 전 적용관 세 (%)	인상 후 적용관 세 (%)	인상폭 (%)
1	1806311000	24	20	4	25	20	24	4
2	1806319000	24	20	4	25	20	24	4
3	1806321000	24	20	4	25	20	24	4
4	1806329000	24	20	4	25	20	24	4
5	1806901000	24	20	4	25	20	24	4
6	1806902000	24	20	4	25	20	24	4
7	1806909000	25	20	5	25	20	25	5
8	3305200000	24	20	4	SL	20	24	4
9	3926908090	17	15	2	20	15	17	2
10	3926909020	17	15	2	20	15	17	2
11	6506101000	20	10	10	15	10	15	5
12	7321110000	18	17	1	B	17	18	1
13	7321190000	18	17	1	B	17	18	1
14	7321810000	18	17	1	20	17	18	1
15	7321890000	18	17	1	20	17	18	1
16	8212100000	20	17	3	20	17	20	3
17	8212201000	20	17	3	20	17	20	3
18	8212209000	20	17	3	20	17	20	3
19	8415200010	27	25	2	B	25	27	2
20	8415812010	27	25	2	B	25	27	2

21	8415813010	27	25	2	B	25	27	2
22	8415819110	27	25	2	B	25	27	2
23	8415819910	27	25	2	B	25	27	2
24	8415819920	27	25	2	B	25	27	2
25	8415822010	27	25	2	B	25	27	2
26	8415823010	27	25	2	B	25	27	2
27	8415829010	27	25	2	B	25	27	2
28	8415832010	27	25	2	SL	25	27	2
29	8415833010	27	25	2	SL	25	27	2
30	8418290000	40	30	10	B	30	40	10
31	8508110000	31	20	11	B	20	31	11
32	8508190010	31	20	11	B	20	31	11
33	8519811000	29	27	2	SL	27	29	2
34	8519812000	29	27	2	SL	27	29	2
35	8519813000	35	34	1	B	34	35	1
36	8523291200	25	15	10	20	15	20	5
37	8523293950	25	15	10	20	15	20	5
38	8525801000	15	12	3	SL	12	15	3
39	8525809000	15	12	3	SL	12	15	3

자료: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정부, 111개 품목 관세 인상 조치」, 2010년

※한·ASEAN FTA: SL(민감품목, 2017년에 20%를 감축, 2021년에 0-5%로 감축), B(초민감품목, 2021년에 20%를 감축)

나. 관세환급의 지연

베트남 수출입 세법(제11조 2항)에 의하면, 현지 투자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275일 동안 관세징수가 유예된다. 수입업자는 가공·수출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원자재 수입 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가공·수출한 경우에는 275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관은 환급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환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급지연에 따르는 이자 보상 등의 규정도 없다.

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관세 및 부가세 환급 또는 관세유예시 주의할 점

은 면세 원자재를 수입하여 1차 가공한 후 현지 업체에게 수출용 원부자재로 판매한 경우이다. 해외의 바이어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 대금을 외화로 받고 바이어의 지시에 따라 현지 업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Local 수출로 간주하여 면세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었다 해도 Local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세 및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²⁶⁾

2. 통관절차의 문제점

베트남에 수입 통관시 현재 시행령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하부기관으로 하달되지 않아 각 세관별 시행 세칙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한 관세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관세사는 고객인 화주가 거래하는 수출입물품(HS) 및 국가에 따라 FTA 협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화주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화주가 이를 먼저 알지 못하여 요청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은 등 소극적 대응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FTA를 통한 관세상의 혜택이 확대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세사는 기존 화주의 거래대상물품이 신규 품목인 경우 일일이 FTA 체결 해당국의 특혜관세적용 대상 물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화주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FTA별 상세한 상담 및 자문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외에도 관세행정 절차가 완비되지 않은 관계로 관세청의 결정이 지방세관에서 반영되지 않고 통일된 품목분류기준 부재, 세관직원의 대응수준

26)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 환경 - 아시아대양주편」, 2010, pp. 135

부족 등 통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베트남 관세청은 2008년 4월 29일부로 전국 세관에 전자서명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라는 공문(1972/TCHQ-GSQL)을 하달,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베트남 지방세관에서는 여전히 한국 측 전자서명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관세체계는 국제관세기구(WCO)에 의한 새로운 국제통일 상품분류(HS Code) 2002년 판을 따르고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베트남은 8자리까지의 상품 분류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9월 재무부 포고령(Decision 39/2006/QĐ-BTC)이후 10자리까지 상품분류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상품분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시설재나 원부자재를 수입시 일반적으로 HS 코드 분류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HS 코드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세관원이 HS 코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코드를 부여함에 따라 수입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표 4-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HS 코드 적용으로 수입관세의 세율이 달라지거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BIP label strip (HS 8517.70.10.00)의 실제 관세는 3% 부과되는데 베트남어로 해석해서 HS 8536.90.99.10로 나타나며 15%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Multi-plug Power Cable(HS 8544.42.11.00, 0%), 20 position Alarm Batt fuse kit(HS 9030.31.00.00, 0%) 등도 베트남어로 해석한 후에 10%, 20%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베트남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 코드분류를 요청하였음에도, 관세청 본청에서 수개월간 회신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표 4-2> 베트남 수입시 HS코드 적용 오류 사례

품목설명서	베트남어 설명서 (번역)	실제 코드 및 관세		부과 코드 및 관세	
		HS 코드	관세	HS 코드	관세
BIP label strip	Bộ đầu nối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20 position Alarm Batt fuse kit	Bộ cánh báo nguồn 20 vị trí	9030 31 00 00	0%	8531 80 19 00	20%
NTY626AE PTE 2000 FRAME CONSUMABLES KIT	K h u n g NTY626AE PTE 2000	8302 49 90 00	20%	8537 10 10 20	3%
MDF block for Alarms	Bộ đầu nối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End of Aisle Panel kit	Phiến đầu dây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BIP Shelf Alarm Jumper Plug	Thiết bị đầu nối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BIP Dual-to-Twon Single Power Feed Adaptor Cable	Dây cáp	8544 42 11 00	0%	8544 42 19 10	10%
Multi-plug Power Cable	Cáp nguồn nhiều phích cắm	8544 42 11 00	0%	8544 42 19 10	10%
NetGuardian 832A Alarm Module Kit	Thiết bị cảnh báo	9030 31 00 00	0%	8531 80 19 00	20%
E1 Paddle Board TLVI34AA	Phiến đầu dây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자료: KIEP,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10.12, pp.75

3. 시장정보의 부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가운데 LG, 대우자동차 등은 성공한 사례에 해당되나 부실한 시장조사, 유통체계의 불확실, 소비자의 계층별 및 인지도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베트남의 유통경

로에서는 한 단계에서 한 단계 지날 때마다 마진의 폭이 크게 폭등하므로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더라도 실제 물건의 가격을 알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현지 시장 정보는 여러 가지 경로로 입수가 가능 하지만 산업별 정보나 특정 서비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정보의 특성상, 중요하고 규모가 큰 시장에 대한 정보는 얻기 쉬우나 소규모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에게 직접 현지를 발로 뛰어다니지 않으면 자사 제품 관련 시장정보를 쉽게 입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통업자 및 수요자 정보를 가장 필요하고 있으며, 정부 및 유관기관이 이에 대한 발굴 및 전파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자원의 제약으로 모든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KOTRA는 한국기업을 위한 베트남 관련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으로 적극적인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정보수요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한국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베트남 법률 문서의 수정 및 개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이 공업화의 첫 단계에 있어서 전환 시기에 맞춰 수출입 및 통관절차 등의 수정 및 개정의 필요성과 사회주의적인 특성으로 인한 관련법규에 대한 명백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기업들 스스로의 정보 입수를 하는 실정 이어서 활용하기 위한 관련정보 제공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4. 수출경쟁력의 약화

지난 2010년 6월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베트남의 시장진입장벽 현황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여, 최근 대 베트남 수출기업과 베트남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제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시 주된 애로요인으로 베트남 수출업체 30% 이상이 현재 대만, 일본, 아세안 국가, 중국 상품 등과 가격경쟁에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했다.

이러한 조사결과 베트남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하는 큰 요인 중의 한 요인으로 보일 수 있다. 가격은 제품의 수명주기의 하나인 요소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진출시 현지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적합한 가격을 제시하여 자사 제품의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토대로 가격경쟁은 경쟁국가간 치열한 문제이면서 기업가들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처럼, 오늘날 베트남시장에 있어 한국기업들도 다른 국가와의 가격경쟁은 불가피하다. 베트남시장 환경이 활발해짐에 따라 ASEAN 국가들 외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 중 중국이 다른 경쟁국보다 우위에 서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연결돼 있어 국경을 통한 교역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유통비의 절감과 국경의 이점을 이용한 밀수로 인해 소비가격은 더욱 인하되었다. 또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원인으로 한국제품은 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에서 중국에 지속적으로 밀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제2절 한 · 베트남 상품교역의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

1. 관세제도 문제점의 대응방안

한 · ASEAN FTA 발효 이후 베트남의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 되었
고 베트남 정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와 산업정책에 따라 관세율 구조를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으
로 상품 수출시 한 · ASEAN FTA 수입관세율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WTO 가입 이후 베트남에 실시하고 있는 MFN 수입관세도 확인해야 해서
둘중 낮은 관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매년마다 수입관세율을 조정하여 매년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
을 확인해야 된다. 위에 분석한 경우처럼 베트남에 현행관세율에 있어
FTA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관세율을 인상해도 FTA에 적용하면 된다. 다
만, FTA관세율 보다 낮은 경우 관세율을 인상한 후 두 가지 경우를 구분
해야 한다. 첫 번째 경우는 관세율을 인상한 후 FTA관세율보다 높게 되면
FTA관세율을 활용하고 두 번째 경우는 FTA관세율보다 낮으면 베트남 관
세율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관세율 변화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임으로
베트남정부와 한국정부간의 정례화된 세관협력 개최 등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원자재를 수입시 사용목적 및 가공납품하는 용도에 따라 현지 기
업과 계약을 하여 어떤 수출로 이루어 졌는지 확실히 하여 베트남 수출입 세
법에 맞는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사후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베
트남세관은 환급신고를 받은 경우는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상당기간이 지연되더라도 환급지연에 따른 이자보상에 대한 규정을 정해 현
지 투자기업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2. 통관절차의 투명성 확보

앞으로도 FTA 협정은 지속적으로 체결될 것이므로 일단 현재 화주가
거래하는 수출입물품(HS)과 국가에 관한 FTA 협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
(관세청 협조)하여 화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규품목, 신규화주일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3월에 한국 관세청
은 베트남 통상산업부와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 간 원산
지 증명 및 검증 관련 정보교환, 원산지 검증 표준절차, 원산지 현지검증
시 상호행정지원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검증 대상기
업이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지검증을 거부할 때는 특혜관
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번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에서 체결한 양해각서는 한-아
세안 FTA 원산지검증의 통일성과 예측성을 확보해 수출기업 피해방지 및
FTA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베트남은 HS 코드분류 제도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으로 크게 3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상품에 대한 분류, 둘째 세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
셋째 세칙 분류에 대한 공문서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상품에 대해 분류하는 원칙은 시행하고 있는 세칙을 기초하여 가공절차,
제품의 속성, 용도, 기능 등으로 분류한다. 이어서 관세관리 및 기타 감독

관리에 따라 다시 한 번 나뉜 세목에 대하여 분류한다. 세목의 분류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세관 전문 세목분류부서 구성인원에 대해 종합적 지식을 요구한다.

세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제품에 대한 특정서술 및 설명이 부족하므로 분류가 불명확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 번 세목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세관은 수출입상품에 대해 세목분류 시 세칙만 채용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세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잡지 등 간행물을 통하여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 공고도 채용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된 공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만 품목이 종류별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통관신고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세관규정들이 자주 바뀌어서 통관신고하기 복잡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세관관리인원이 수시로 통보된 공고를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3. 시장정보의 확대

베트남시장은 다양함과 복잡함을 가지고 있어 진출하기 전에 시장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품목마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사제품에 대한 적합한 유통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외시장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서 대면 접촉이나 방문, 또는 보고서 및 문헌조사 등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지조사 결과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어 소규모기업의 경우 큰 부담으로 적용하게 되며, 인터넷을 통한 베트남정보의 수집은 무료인데 비해

한계가 있어 유료 시장자료를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표 사무소를 설치해 놓아야 한다.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나날이 증가하는데 비해 중소기업들은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서 베트남 진출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KOTRA과 같은 신뢰성이 있는 대표 사무소가 많이 설립되면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시장을 파악하여 자사제품의 진출 계획을 세워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다양한 상품 수출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는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해야 한다. 중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의 확대에 성공한 것은 바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조사하여 다양한 공급하면서 베트남 소비자의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한국산 제품은 베트남시장에서 우수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일본산 제품과 경쟁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한국기업은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베트남은 한류 열풍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이며, 또한 한류 영향으로 한국 상품의 수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베트남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매체를 이용한 광고 선전으로 소비자의 인지

도를 높여야한다. 이는 베트남인들이 브랜드 선호도가 강한 소비성향을 보이므로 일단 소비자에게 인정된 상품은 시장 침투 및 유지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상품광고의 가장 좋은 방법은 TV를 들 수 있으며 이외 신문 잡지를 비롯 각종 기획 행사에 후원 참여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현재 고급품에 대한 특정계층의 수요가 활발하나 장기적으로 대량적인 수요를 잠재하고 있는 대중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만, 중국, 동남아 국가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중급가격에 품질이 우수한 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에서도 일반국민의 정서와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제V장 결론

제1절 결론

2007년 6월 상품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의 네 번째 FTA로 기록된 한·ASEAN FTA는 한국이 최초로 주요 교역국·교역지역과 체결한 첫 번째 FTA인 동시에 인구 5억의 거대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한·ASEAN FTA에서 한국은 발전정도가 상이한 ASEAN 10개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FTA를 이끌어냄으로써 ASEAN지역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수출과 한국기업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과의 교역액이 눈에 띄게 늘었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도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가 양국 간 무역교류 증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ASEAN FTA 발효 이후 베트남과 한국 양국 상품교역량에 큰 영향을 보일 수 있다. 우선 양국간 상품교역량을 살펴보면 폭증세를 나타냈다. 한·ASEAN FTA 이전에 교역량은 39억 달러('04), 42억 달러('05), 48억 달러('06)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한·ASEAN FTA 이후 교역량은 71억 달러('07), 98억 달러('08)로 큰 변화가 있었다. 2008년 말부터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양국간 교역량은 94억 달러에 달했으나 2010년 경제위기를 회복하여 교역량은 129억 달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것을 바탕으로 대 베트남무역에서 한국의 위상변화 또한 한국무역에서 베트남의 위상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 한·ASEAN FTA 이전에 베트남의 11대 수출대상국으로 그리고 5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지만 이후에 베트남의 4대 수출대상국과 2대 수입대상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베트남은 한·ASEAN FTA 이전에 한국의 17위 수출대상국 그리고 35위 수입대상국에서 한·ASEAN FTA 이후 한국의 9위 수출대상국과 28위 수입대상국으로 이르게 되었다. 양국간 품목별 상품교역에 대해 한국은 베트남에 석유제품과 컴퓨터, 자동차, 철강 등을 주로 수출했고, 반대로 어류와 원유, 석탄 등을 주로 수입하였다. 베트남은 그동안 관세 장벽이 높았던 국가로 이번 FTA로 인한 시장 개방으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의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이 수입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함으로써 향후 베트남산 농림수산물 및 가공품, 경공업 제품 등에 대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베트남 상품교역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베트남의 관세율이 변화됨으로서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시 베트남 현행관세율을 FTA관세율과 항상 비교해야 된다. 그리고 FTA 관세율은 아직 MFN 관세율에 비해 일부 품목에서만 낮은 세율인 상황으로 둘 중 낮은 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환급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베트남 정부는 관세환급 지연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 베트남 세법에 두 번째는 통관절차 문제에 대해서 HS 코드 분류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세밀한 분류, 세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 세칙 분류에 대한 공문서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크게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문제에 대해 한·베트남 관세청에서 체결한 양해각서는 한·ASEAN FTA 원산지검증의 통일성과 예측성을 확보하여 수출기업 피해방

지 및 FTA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시장정보의 부족 측면에 대해 철저한 시장조사를 강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상담회 및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베트남현지 정보 제공 대표사무소 설립 등에 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 문제는 한국은 현재 중국을 포함하여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과 베트남시장에서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이 치열하여 수출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앞으로 대 베트남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통망 확대, 다양한 제품 공급,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도 유지, 저가격, 고품질 등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한류열풍의 영향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한 · ASEAN FTA 발효 이후, 한 · 베트남 상품교역이 발전된 것을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와 FTA가 발효 중이지만 한국과 베트남 양국정부는 양국 간의 교역을 고려할 때 서로의 중요한 경쟁 상대인 만큼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양자 FTA를 추진해 자유화를 심화시킨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 · 베트남 FTA를 진행할 계획이 있어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투자 분야에도 많은 영향 및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양국 정부, 기업간의 지원, 교육정책 등을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한 · ASEAN FTA 발효 한지 3년 밖에 안 되는 바탕으로 FTA의 적용에 한 · 베트남 상품교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KOTRA, KIEP, 한국 관세청 등에서 양국의 상품교역 데이터가 주로 수집해 분석하여 분석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향후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ASEAN FTA 관세인하 이전 입장, 이후 입장으로 한·베트남 교역의 긍정적, 부정적인 이익을 비교해야 하며 세밀한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베트남 FTA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향후 양국 FTA가 성공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한·베트남 교역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더 깊은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이재기(2010), “FTA의 경제학”, 청목출판사.

정인교(2010),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국내 문헌>

남풍우 · 최준호(2007), “한 · 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2호.

오인식(2004), “한국과 베트남간 경제협력 현황과 정책방향 - 쌍무무역과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 상명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 19호.

한상현(2001), “중국의 통관 및 관세제도의 문제점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책”, 창업정보학회지 제4권 제1호.

김용진(2006), “한 · ASEAN FTA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무역통상학회지」 제6권 제2호.

김동규(2010), “한국 · 베트남간 경제현황과 교역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1호.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2009), “한 · 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한성(2007), “한 · 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태운 · 손기태 · 정재원 · 이재호 · 백유진 (2010),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준호 · 홍승린(2006), “중국 · ASEAN FTA에 따른 관세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8권 제1호.

외교통상부(2007), “한 · ASEAN FTA 주요내용 - 기본협정 · 분쟁해결제
도협정 · 상품무역협정”.

외교통상부(2010), “2009 외국의 통상환경 - 아시아 대양주지역”.

한국수출입은행(2006), “베트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한국학위논문>

웬은하(2006),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현황과 수출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청운대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아미(2008),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실증
적 분석 및 평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중
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argaret Lopulisa(2008), “한 · 아세안 FTA가 한 · 인니 교역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 우송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민정(2006), “베트남 WTO 가입을 계기로 본 아세안 교역변화와 한국의
대처방안 - 베트남 교역과 수출전략 중심으로 -”, 연세대 경제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학(2010), “한 · 일 FTA현황과 추진전략”,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김지선(2008), “한 · 일 FTA 타결 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협상을 중심으
로 -”,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우식(2005), “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2008), “ 한 · ASEAN FTA 체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ASEAN 주요국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티투흐영 (2010), “한국 · 베트남 FTA의 전망”,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자(2008), “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칠레,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 원광대 산업 ·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혜오(2007), “한 · 중 FTA의 기대효과와 대응방안”,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2007), “중국 수입통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남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i Shuang(2009), " A Study on China's Tariff System under WTO: Focused on Tariffs Concession", 부경대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경덕(2005), “ASEAN 발전에 따른 한국 · ASEAN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희정(2007), “한국과 중국 FTA의 경제효과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외국문헌>

- Tran Chi Thien(2008), "ASEAN-South Korea Trade Cooperation in Integration Progress to the Region and the World Economy", Logos Management Review Volume 6 No.3.

- Asian Development Bank(2008), "Capacity buildings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 of the free trade agreement units of selected ASEAN member countries".
- Fukase, E. and L. A. Winters(2003), "Possible Dynamic Effects of AFTA for New Member Countries", The World Economy, Vol.26.
- Kien, T.N. , Lee, H.R. , Heo, Y.(2010), "Dynamic Patterns of Korea-Vietnam Trade Relations",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13 No.2.

<인터넷 사이트>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 관세청(<http://www.customs.c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http://www.kotra.co.kr>)
-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http://www.kita.net>)
- 한국관세무역개발원(<http://www.custracom>)
- South Korea Bank for Export and Import(<http://www.koreaexim.go.kr>)
- Nation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ooperation Office (<http://www.niec.gov.vn>)
-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http://www.vcci.com.vn>)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http://www.moit.gov.vn>)
- Vietnam Customs(<http://www.customs.gov.vn>)
-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ttp://www.wto.org>)